

성과감사



# 감 사 보 고 서 (별도처리)

- 공공기관 결산 및 회계감사 운영실태 -  
(결산 및 회계감사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2025. 8.

감 사 원

# 목 차

제1장 감사실시 개요 .....	1
제2장 감사대상 업무 현황 .....	3
제3장 감사결과 .....	8
1. 회계감사인 선정 분야 .....	9
2. 회계감사 관리 및 수행 분야 .....	31
제4장 종합결론 및 통보 .....	62
[별표] .....	67

# 표 목차

[표 1] 감사 대상 분야와 세부 중점 .....	2
[표 2]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감사인 선정 방식 .....	4
[표 3] 회계감사인 선정 현황 .....	5
[표 4] 2017년 외부감사법 주요 개정 내용 .....	6
[표 5]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공기업·준정부기관 .....	10
[표 6] 선임위원회 구성 관련 법령 위반 사례 .....	11
[표 7] 외부감사법 등에서 정한 선임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	12
[표 8]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선임위원회 권한·기능 .....	13
[표 9] 선임위원회의 개최 현황 .....	14
[표 10] 선임위원회의 심의안건 현황 .....	15
[표 11] 회계감사인 계약 현황 .....	18
[표 12]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기준 표준예시 .....	19
[표 13] 감사시간을 평가지표에 포함하지 않은 기관 명세 .....	21
[표 14] 회계자문 등 부가서비스를 평가지표에 포함한 기관 명세 .....	22
[표 15] 국가계약법과 다르게 모집공고 기간을 정한 기관 명세 .....	26
[표 16] 입찰공고기간이 10일 미만인 기관 명세 .....	27
[표 17] 입찰공고기간이 40일 미만인 기관 명세 .....	28
[표 18] 회계감사인 선정기한 미준수 현황 .....	29
[표 19] 회계감사인 선정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 보고한 기관 명세 .....	30
[표 20] 2018~2023년 상장기업 평균 감사시간 및 자산총액 .....	33
[표 21]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별 평균 감사시간 및 자산총액 .....	33
[표 2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산총액 및 감사시간 분포 .....	34
[표 23]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감사시간과 표준감사시간 비교 .....	34
[표 24] 공기업의 계약감사시간과 표준감사시간 비교 .....	35

[표 25] 준정부기관의 계약감사시간과 표준감사시간 비교 .....	35
[표 26] 적정감사시간을 사전에 산정하는 기관 명세 .....	37
[표 27] 감사시간을 협의하여 계약내용에 반영한 기관 명세 .....	38
[표 28] 동일이사 6개 회계연도 연속 감사수행 현황 .....	41
[표 29] 회계감사 과업에 회계자문을 포함한 기관 명세 .....	43
[표 30] 외부감사법(제8조 등)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개요 .....	47
[표 31]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별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현황 .....	48
[표 32] 회계감사인의 현장감사 착수 후 감사 前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관 현황 .....	49
[표 33] 감사 前 재무제표의 회계감사인과 PIFRS 제출일 간의 차이 분석 .....	50
[표 34] 공공기관 유형별 감사보고서 작성 기간 .....	51
[표 35] 감사보고서 지연발행 현황 .....	52
[표 36] 표준 중요성 금액보다 높게 중요성 금액을 설정한 기관(2023회계연도) .....	56
[표 37] 표준 중요성 금액과 비교해 같거나 낮게 중요성 금액을 설정한 기관(2023회계연도) .....	57
[표 38]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중요성 금액 설정 내역(2023회계연도) .....	58
[표 39]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대한 중요성 금액 설정 내역(2023회계연도) .....	59
[표 4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한 중요성 금액 설정 내역(2023회계연도) .....	60

## 그림 목차

[그림 1]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절차 .....	3
[그림 2] 중요성 금액 산정 방법 예시 .....	55

# 제1장 감사실시 개요

---

## 1 | 감사 배경과 목적

공공기관의 건전성과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는 물론, 공공재정과 공공요금 관리 등의 기초 자료가 되고 국가 재정정책 수립과 집행의 근간이 되는 공공기관의 결산 및 회계정보는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한데도, 감사원 결산감사에서 중요한 회계오류가 지적·반복되는 등 공공기관의 결산 및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2017년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2017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을 개정하고 충실한 외부 회계감사 수행에 필요한 감사시간 확보와 표준감사시간제, 주기적 회계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회계감사의 품질과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강화한 민간 부문과 비교된다.

이에 따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은 공공기관의 결산과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회계감독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공공기관 담당자의 회계 전문성 부족과 회계법인에 대한 과도한 의존, 외부 회계감사의 촉박한 일정과 짧은 감사시간, 결산과 회계감사에 대한 신뢰성 검증 절차 미흡 등으로 그간 추진한 정책의 실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결산, 회계감사 관리와 수행 실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여 공공기관의 결산 책임성을 강화하고 회계감사의 품질을 향상함으로써 공공기관 회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 2 | 감사 대상과 중점

이번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표 1]과 같이 회계감사의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감사인 선정, 회계감사 관리 및 수행 분야로 나누어 관련 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점검하였다.

[표 1] 감사 대상 분야와 세부 중점

분야	점검 중점
회계감사인 선정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적정성</li><li>회계감사인 선정기준의 적정성</li><li>회계감사인 선정절차의 적정성</li></ul>
회계감사 관리 및 수행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감사시간 산정과 관리의 적정성</li><li>회계감사인 독립성 확보의 적정성</li><li>감사 전 재무제표 작성·제출의 적정성</li><li>회계감사인의 중요성 기준 설정의 적정성</li></ul>

## 3 | 감사실시 과정

감사원은 회계감사인 선정과 관련된 자료, 결산 및 회계감사와 관련한 계약 내용 등의 자료와 24개 기관의 회계감사인 감사조서 등에 대한 자료수집과 분석 절차를 거쳐 감사인원 16명을 투입하여 2024. 11. 4.부터 같은 해 12. 6. 사이에 20일간 실지감사를 하였다.

## 4 | 감사결과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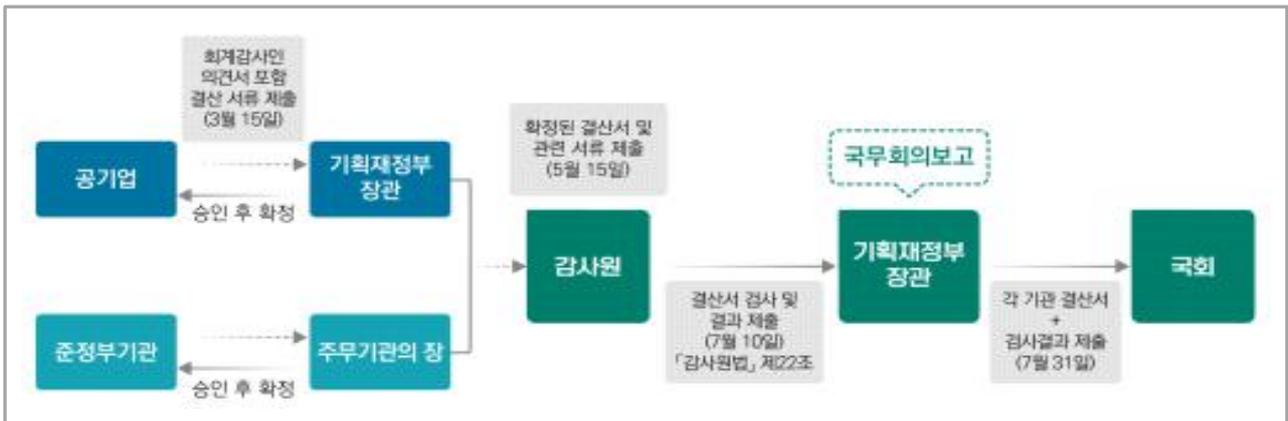
감사원은 회계감사인 선정, 회계감사 관리 및 수행에 대한 분석결과와 개선 방향 등에 대하여 해당 기관과의 질문·답변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감사원 사무처 내부검토를 거쳐 2025. 7. 10.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 제2장 감사대상 업무 현황

### 1 |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 개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 제43조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 이하 “결산감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등을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등에게 제출하고,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이 4월 10일까지 각각 결산서를 승인하여 결산을 확정하게 된다.

[그림 1]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절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공공기관」 재구성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운영법 제43조에 따라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정된 결산서 등을 매년 5월 15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고, 감사원은 「감사원법」과 결산감사규칙으로 정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 등을 검사한 후, 그 결과를 7월 10일까지 다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결산서와 감사원의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7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 2 회계감사인 선정 방법과 절차

공공기관운영법 제43조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회계법인과 감사반의 선정기준 및 회계감사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감사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결산감사규칙 제4조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당해 기관 및 감사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회계감사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회계감사인을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운영법 제43조의3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선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있고, 결산감사규칙 제7조에서 회계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고, 선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내부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제2조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국가계약법, 자체 계약규정 등에 따라 각각의 방식으로 회계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으며, [표 2]와 같이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회계감사인을 선정하고 있다.

[표 2]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감사인 선정 방식

(단위: 개)

구분	계약방법			낙찰자 선정방법	
	일반경쟁	제한경쟁	수의계약(유찰)	협상	기타
공기업	14	14	4	31	1
준정부기관	9	44	2	52	3
계	23	58	6	83	4

자료: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3 회계감사인 선정 현황

공공기관운영법 제43조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외부감사법 제2조 제7호 나목에 따른 감사반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2024회계연도 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인 선정 현황을 보면, [표 3]과 같이 감사반을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한 기관은 없었고, Big 4 회계법인(☐대, ☐대, ☐대, ☐대)이 17개 기관(19.5%), 등록회계법인<sup>1)</sup>이 50개 기관(57.5%), 기타회계법인이 20개 기관(23%)의 회계감사인으로 선정되어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다.

[표 3] 회계감사인 선정 현황

(단위: 개)

유형	공공기관	감사인 규모별 공공기관		
		Big 4 회계법인	등록회계법인	기타회계법인
공기업	32	15	16	1
준정부기관	55	2	34	19
계	87	17	50	20

자료: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4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절차

공공기관운영법 제43조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있고, 회계감사의 절차, 감사원의 결산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결산감사규칙 제11조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회계감사인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공감사기준」(감사원 규칙) 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1) 주권상장법인의 회계감사인이 되기 위해 감사품질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Big 4 포함 41개 회계법인)

있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인은 「공공감사기준」과 외부감사법 제16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정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다.

## 5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감사 제도개선 추진

민간부문 회계감사 제도의 경우 정부는 2017년 10월 28일의 대규모 분식회계 발생 등을 이유로 회계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표 4]와 같이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등을 개선하고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기적 회계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외부감사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표 4] 2017년 외부감사법 주요 개정 내용

관련 조문	개정 요지
제6조, 제3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회사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강화)</b> 회사가 회계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재무제표를 사전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하도록 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위반사실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함</li> </ul>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회사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요구 등 금지)</b>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회계감사인에 게만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회계처리 자문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회사에 대해서도 이러한 행위를 회계감사인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li> </ul>
제9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상장법인 회계감사인 등록제도 도입)</b>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는 감사품질 관리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만 할 수 있도록 함</li> </ul>
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감사인 선임절차 개선)</b> 회계감사인 선임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회사 경영진이 감사 또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하던 것을 감사(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자를 선임하도록 변경</li> <li>▪ <b>(감사인의 감사보수, 시간 등 문서화)</b>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함</li> </ul>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주기적 회계감사인 지정제 도입)</b>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상장법인 등에 대해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회계감사인을 회사가 선임한 이후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주기적 회계감사인 지정제를 도입</li> </ul>
제16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표준감사시간 도입)</b>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표준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li> </ul>

자료: 외부감사법 제·개정 이유 및 관련 조문 재구성

반면에 공공부문의 경우 2021년부터 기관장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결산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회계감사인의 감사시간 확보 등을 위해 결산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거나 조치 중에 있으나, 민간부문과 같은 회계감사인의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제3장 감사결과

---

### □ 회계감사인 선정, 회계감사 관리의 주요 실태분석 및 개선방향 (통보)

회계감사의 품질은 ‘회계오류와 부정을 발견할 가능성’과 ‘이를 보고할 가능성’에 따라 결정되고, ‘회계오류와 부정을 발견할 가능성’은 회계감사인의 노력이 커질수록 증가하고 ‘발견된 회계오류와 부정을 보고할 가능성’은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이 커질수록 증가한다.

따라서 회계감사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감사인을 공정하게 선정하고, 선정된 감사인이 충분한 노력(감사시간)을 투입하여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입증절차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게 회계감사인을 선정하고 있는지, 선정된 감사인이 충분한 감사시간을 투입하여 충실하게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중점으로 설정하였고, 위 사항들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될 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지적보다는 종합적으로 실태를 분석·점검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인 선정과 관련된 자료, 결산 및 회계감사와 관련한 계약 내용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는 한편, 24개 기관의 회계감사인 감사조서를 제출받아 회계감사 수행실태를 점검하여 감사인 선정 및 회계감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 1 회계감사인 선정 분야

회계감사 능력을 갖춘 회계감사인을 공정하게 선정하는 것은 회계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감사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이는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선임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전문성을 갖춘 회계감사인을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회계감사인 선정절차와 평가기준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가능하다.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는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선임위원회 운영, 회계감사인 선정절차와 평가기준 등의 실태를 분석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회계감사인을 선정할 수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한편, 선정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도 같이 점검하였다.

### ①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과 운영 개선 필요

공공기관운영법 제43조의3, 결산감사규칙 제7조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선임위원회로 본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선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내부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르면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아 선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선임위원회 위원은 해당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감사와 비상임이사 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비상임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정하도록 되어있으며, 그 외 선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있다.

## 가. 법령에 위반되게 선임위원회 구성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선임위원회 구성을 보면 [표 5]와 같이 한국전력공사 등 20개 기관은 감사위원회<sup>2)</sup>가 설치되어 선임위원회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나머지 67개 기관은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아 별도의 선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표 5]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시장형 공기업(14개)	준시장형 공기업(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전력공사, (주)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공항공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li> </ul>

자료: 공기업·준정부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선임위원회 운영규정, 회의록 등을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26조의2에서 선임위원회는 감사와 비상임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비상임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표 6]과 같이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6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대한석탄공사 등 6개 기관은 내부 선임위원회 운영규정을 공공기관운영법에 맞지 않게 정하고 있었고, 이 중 4개 기관[대한석탄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감사실장이 선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거나 감사가 위원장으로 선정되는 등 실제 선임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서도 공공기관운영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공공기관운영법 제20조 제2항에서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

[표 6] 선임위원회 구성 관련 법령 위반 사례

기관명	내부 운영규정	실제 운영	위반 사항
<b>(1) 내부 운영규정 및 실제 선임위원회 운영상 법규 위반</b>			
대한석탄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임위원회 위원은 감사, 비상임이사, 감사실장으로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4~2026회계연도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선임위원회에 감사실장이 위원으로 참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사 또는 비상임이사가 아닌 자가 위원으로 참여</li> </ul>
한국환경산업기술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임위원회는 감사, 비상임이사, 청렴옴부즈만, 해당 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2~2024회계연도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선임위원회에 청렴옴부즈만이 위원으로 참여</li> </ul>	
그랜드코리아레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임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미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2~2024회계연도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선임위원회에 감사, 비상임이사 외에 주주, 금융기관과 기관투자자의 직원이 위원으로 참여</li> </ul>	
한국장애인고용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임위원회는 감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2~2024회계연도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선임위원회에 감사를 위원장으로 선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상임이사가 아닌 자를 위원장으로 선임</li> </ul>
<b>(2) 내부 운영규정의 법률 위배(실제 선임위원회 운영상 위반사항은 없음)</b>			
근로복지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임위원회는 감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법령에 맞게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체 운영규정상 비상임이사가 아닌 자를 위원장으로 선임 가능</li> </ul>
한국환경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임위원회는 감사, 감사가 지명하는 4명 이내의 비상임이사로 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상임이사 전체를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법령에 맞게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체 운영규정상 비상임이사 중 일부만 위원으로 참여 가능</li> </ul>

자료: 공기업·준정부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나. 선임위원회 권한·기능의 보완 필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선임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해 운영규정, 운영기준 및 지침 등의 형태로 내부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에서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선임위원회가 독립성과 능력을 갖춘 회계감사인을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게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선임위원회가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주요 절차에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민간부문의 경우 외부감사법 제10조 제4항에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회가,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회계감사인을 선정하도록 하면서<sup>3)</sup> 외부감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에서 [표 7]과 같이 회계감사인 선정기준과 절차, 감사보수·시간·투입인력에 대한 문서화, 제안서 평가, 회계감사인 선정 등 선임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선임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표 7] 외부감사법 등에서 정한 선임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구분	감사위원회 설치 기관	선임위원회 설치 기관	비고
선정기준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사위원회가 승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임위원회가 승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li> </ul>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서화: 감사위원회가 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부감사법 제10조 제5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후평가: 감사위원회가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사가 평가한 후 선임 위원회에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부감사법 제10조 제6항</li> </ul>
제안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사위원회가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임위원회가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장법인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표준예시</li> </ul>
감사인 선정 및 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사위원회가 선정, 기관이 선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 기관이 선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부감사법 제10조 제4항</li> </ul>
감사인 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사위원회가 해임 요구, 기관이 해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해임 요구, 기관이 해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부감사법 제13조 제2항</li> </ul>

자료: 외부감사법과 상장법인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표준예시 재구성

### (1) 선임위원회 운영규정 보완 필요

이번 감사원 감사 시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선임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선임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분석하고, 이를 민간부문과 비교·검토하였다.

그런데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선임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면서 선임위원회가 회계감사인을 선정한다고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권한과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선임위원회가 회계감사인 선임과정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3) 외부감사법 제10조 제4항에서 그 밖의 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하도록 되어있음

**운영규정에서 선임위원회의 권한, 기능 미규정 사례**

- (한국부동산원) 회계감사인을 선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한다고만 규정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선임위원회가 회계감사인을 선정한다고만 규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회계사무규칙에서 선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위원회의 권한, 기능 등은 미규정

그리고 공기업·준정부기관 선임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각 기관의 운영규정을 토대로 민간부문과 비교해 보면, [표 8], [별표 1] “선임위원회 운영규정의 위원회 권한·기능 분석”과 같이 회계감사인 선정기준을 선임위원회 운영규정에 반영하지 않거나 심의사항으로도 정하지 않은 기관이 33개였고, 특히 공공기관 운영법 제43조의3 제3항에 따르면 감사(선임위원회 승인 필요) 또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에 대해 선임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기관은 공기업 3개에 불과(준정부기관은 없음)하였다.

또한, 회계감사인 변경 또는 해임 시 선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명시하지 않은 기관도 26개에 이르고 있었다.

**[표 8]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선임위원회 권한·기능**

(단위: 개)

구분	선임위원회 운영규정에 해당 권한·기능이 규정된 기관 수							계	미규정 기관 수
	공기업			준정부기관					
	시장형	준시장형	소계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소계			
선정기준 <sup>1)</sup>	규정화	1	4	5	9	21	30	35	52
	위원회 심의	5	8	13	2	9	11	24	63
감사보수·시간·인력	문서화	1	2	3	-	-	-	3	84
	사후평가	4	2	6	-	-	-	6	81
제안서 평가 <sup>2)</sup>		4	4	8	11	32	43	51	36
선정 및 선임		14	16	30	10	38	48	78	9
변경 및 해임 <sup>3)</sup>		14	14	28	4	29	33	61	26

주: 1. 선정기준을 규정화하거나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정한 59개 기관 중 5개 기관은 중복됨에 따라 87개 기관 중 33개 기관의 선임위원회에서 선정기준을 다루지 않음

2. 운영규정에 선임위원회 기능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선임위원회가 제안서를 평가한다고 기재된 경우를 포함

3. 선임위원회 운영규정에 선임위원회의 기능으로 변경 또는 해임 중 하나라도 명시한 경우임

자료: 공기업·준정부기관 선임위원회 운영규정을 토대로 감사원 재작성

## (2) 선임위원회 운영 미흡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부터 2022년 이후 선임위원회 심의안건, 회의록을 제출받아 심의내용을 검토한 결과, [표 9], [별표 2] “선임위원회 개최 및 심의 안건 현황”과 같이 회계감사인 선정 시<sup>4)</sup> 선임위원회를 3회 개최한 기관은 6개에 불과하고 1회 개최한 기관이 53개(60.9%), 2회 개최한 기관이 28개(32.2%)였으며, 2개 기관은 선임위원회를 대면회의 없이 서면심의만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sup>5)</sup>

[표 9] 선임위원회의 개최 현황

(단위: 개)

구분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	
	시장형	준시장형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검토대상 기관 수	14	18	12	43	87	
개회 횟수	1회	4	7	10	32	53
	2회	8	9	1	10	28
	3회	2	2	1	1	6

자료: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제출한 선임위원회 회의록, 회계감사인 선정계획 등을 토대로 재구성

### 감사인 선정 시 서면회의만 개최한 사례

- (한국광해광업공단) 2024~2026회계연도 회계감사인을 선정하면서 감사위원회에서 2024년 3월 선정계획안을 서면의결하고, 같은 해 5월 회계감사인 선임안도 서면의결만 거친 채 회계감사인 선임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4년 6월 2024~2026회계연도 회계감사인 선정안을 선임위원회 위원 7인의 서면의결로 확정

그리고 선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보면, [표 10], [별표 2] “선임위원회 개최 및 심의안건 현황”과 같이 선임위원회에서 선정계획 또는 선정기준을 의결한 기관은 32개, 제안서를 평가한 기관은 64개, 선임안을 의결한 기관은 31개로 분석되었다.

4) 결산감사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선정된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 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이므로 각 기관은 통상 3년에 한 번 회계감사인 선정  
5) 민간부문의 경우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서 감사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회는 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

[표 10] 선임위원회의 심의안건 현황

(단위: 개)

구분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	
	시장형	준시장형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검토대상 기관 수	14	18	12	43	87	
선임위원회 심의안건	선정계획 또는 선정기준	8	11	2	11	32
	제안서 평가	5	9	12	38	64
	선임안 의결	13	11	1	6	31

자료: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제출한 선임위원회 회의록, 외부감사인 선정계획 등을 토대로 재구성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선임위원회에서 선정계획 또는 선정기준을 심의하지 않은 55개 기관 중 30개 기관은 선임위원회 운영규정에 이미 별도의 선정기준을 정하고 있었고, 나머지 25개 기관은 선임위원회가 아닌 감사실 또는 회계감사 수감부서인 경영지원 관련 부서 등에서 결정하고 있었다.

**선정기준을 회계 관련 부서에서 결정한 주요 사례**

- (한국전력거래소) 재무경영팀에서 2022. 4. 18. “2022~2024 외부 회계감사인 선임 추진 계획”(평가기준 포함)을 마련하고, 선임위원회는 2022. 6. 24. 재무경영팀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
- (한국석유관리원) 재무회계팀에서 2022. 5. 18. “2022~2024 외부 회계감사인 선정 계획”(평가기준 포함)을 마련하고, 선임위원회는 2022. 6. 15. 재무회계팀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무회계부에서 2023. 5. 24. “2023~2025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개최 계획”(평가기준 포함)을 마련하고, 선임위원회는 2023. 6. 9. 재무회계부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제안서 평가는 87개 기관 중 64개 기관에서 선임위원회를 거치고 있고, 나머지 기관의 경우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는데 이 중 14개 기관은 평가위원회에 경영관리팀 직원 등 내부위원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시 내부위원을 포함한 기관**

-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전KPS(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공항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조폐공사, 한국부동산원

선임안은 31개 기관만이 선임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선임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한 64개 기관 중 11개 기관만이 별도의 선임안을 의결하고 나머지 53개 기관은 제안서 평가 시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감사인을 결정하고 후속 선임절차는 기관에 위임하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공공기관운영법 제43조의3에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기관의 감사는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55개 기관([표 10], [별표 2] “선임위원회 개최 및 심의안 건 현황” 참조)이 회계감사인 선정계획 등에 대해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있었고, 선정계획 등을 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한 32개 기관도 선정계획이 예정가격, 계약방식, 선정기준 위주로 작성되어 있어 문서화할 대상인 감사시간 등에 대한 검토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준정부기관의 경우 55개 기관 중 37개 기관의 선임위원회가 선정계획·선정기준 수립, 감사보수·시간, 계약 내용 등에 대해서는 심의·검토를 하지 않은 채 제안서 평가만 수행하고 있고, 계약단계에서 감사보수, 감사시간 등에 대해 선임위원회에서 협의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에 관여하지 않는 등 선임위원회에서 회계감사인을 선정하도록 한 공공기관운영법의 취지에는 미치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 다. 소결

정부는 2009. 3. 25. 공공기관운영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선임위원회에서 회계감사인을 선정하고, 선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임이사는 모두 선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 선임위원회를 법령과 다르게 구성하는 사례가 있었고, 각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내부 선임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제도 도입 후 15년이 지난 2024년 현재까지도 대다수 기관이 선임위원회의 권한, 기능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거나 제한적인 기능만 부여하고 있어 회계감사인 선정 시 제안서 평가 또는 선임안 사후승인 역할에 그치고 있고, 일부 기관에서는 선정기준 마련, 제안서 평가에 사업부서가 참여하는 등 당초 선임위원회를 도입한 취지에는 미치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따라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앞으로 선임위원회 운영규정에 선임위원회가 회계감사인 선정과정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선정기준 마련과 제안서 평가 등에 내부위원이 참여하는 등 선임위원회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회계감사인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며, 공공기관운영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 ② 회계감사인 선정기준 개선 필요

공공기관운영법 제43조에 따르면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회계법인과 감사반의 선정기준 등을 감사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감사원은 결산감사규칙 제4조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당해 기관 및 감사 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회계감사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회계감사인을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4년 현재까지 구체적인 회계감사인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표 11]과 같이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를 활용하여 기관별로 다양하게 평가항목, 배점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표 11] 회계감사인 계약 현황

(단위: 개)

구분	계약방법			낙찰자 선정방법	
	경쟁계약		수의계약 (유찰)	협상	기타
	일반경쟁	제한경쟁			
계	23	58	6	83	4
공기업	14	14	4	31	1
준정부기관	9	44	2	52	3

자료: 공기업·준정부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제안서 평가는 회계감사의 품질을 결정하는 전문성, 충분한 입증감사를 위한 회계감사인의 노력, 독립성 확보 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체화된 선정기준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충실한 제안서를 작성하게 하고, 충실하게 작성·제출된 제안서는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 및 계약 과정에서 계약 내용을 결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이에 따라 민간부문의 경우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3조에서 회계감사인을 선정하는 자는 미리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선임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고, 위 기준과 절차에는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회계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상장사협의회는 위 시행령 등을 고려하여 [표 12]와 같이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기준 표준예시”를 마련하여 회원사로 하여금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계법인의 역량(20점)보다는 실제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역량(40점), 투입인력·투입시간 등 감사수행 절차의 적정성(30점)에 중점을 두고 있고, 회계법인의 역량도 단순히 회계법인 자체의 매출액, 감사경험보다는 회계감사의 품질과 관련된 내부품질관리 체계, 과거 수행업무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는 특징이 있다.

[표 12]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기준 표준예시

구분	평가기준	평가내용
감사업무 수행팀의 역량 (40점)	감사담당자의 경험(15점)	감사팀의 평균 감사업무 수행기간, 수습회계사 비율 등
	감사담당자의 산업 전문성(12점)	파트너·매니저의 동종산업에 대한 누적감사시간 등
	파트너의 업무부담(5점)	담당파트너의 전체 감사회사 수, 감사투입시간 비율 등
	매니저·스텝의 업무부담(5점)	매니저·스텝의 전체 업무시간 대비 감사투입시간 비율 등
	징계(3점)	담당파트너의 징계 건수, 성격
회계법인의 역량 (20점)	내부품질관리(10점)	내부품질관리 정책 및 절차, 소속 공인회계사 수 대비 품질관리인력 비율 등
	독립성 및 법규 준수(5점)	관련 정책 및 절차의 적정성
	과거 수행업무의 적정성(5점)	최근 3년간 감리지적 및 재무제표 재작성 비율 등
감사수행 절차의 적정성 (30점)	투입인력 및 투입시간의 적정성 (15점)	전기 대비 감사투입인력 및 시간의 변동, 파트너·매니저·스텝의 감사단계 별 투입시간 등
	파트너·매니저의 업무관여도(7점)	감사투입시간 대비 파트너·매니저의 투입 비율 등
	위험분야에 대한 감사계획(5점)	위험분야 파악, 인력배치 및 투입시간의 적정 여부 등
	전문인력 활용(3점)	IT감사, 가치평가, 파생상품 분야 등

자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료 재구성

이에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제안서 평가항목, 배점 등 제안서 평가기준을 분석하여 감사시간, 감사인력의 전문성 및 독립성 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 선정기준을 운용하고 있는지를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기준 표준예시” 등을 참고하여 분석·검토하였다.

#### 가. 감사시간 등 감사품질에 중요한 요소를 평가지표에 미포함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에 투입하는 시간과 감사참여자의 역량은 회계감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사항으로, 특히 2017년 [가] 등 대규모 분식회계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불충분한 감사시간이라는 분석에 따라 표준감사시간제를 도입하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보수와 감사인력·시간을 정하고 감사보고서에 실제 감사참여 인원수, 감사내용 및 소요시간을 첨부하도록 외부감사법이 전면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운영법에서도 감사위원회 또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가 회계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도록 하는 등 감사시간과 감사인력 등은 감사품질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제안서 평가기준을 분석한 결과, [표 13]과 같이 분석대상 기관 중 한국마사회 등 36개 기관은 ‘감사시간’을 평가항목에 반영하지 않고 있었고, 이를 공공기관 유형별로 보면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대부분(44개 기관 중 37개 기관) 감사시간을 평가지표에 포함하고 있었으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43개 기관 중 29개 기관(67%)이 감사시간을 평가지표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3] 감사시간을 평가지표에 포함하지 않은 기관 명세

(단위: 개)

구분	기관 수	감사시간을 평가지표에 포함하지 않은 기관	
		계	기관명
계	87	36	
시장형 공기업	14	1	한국도로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8	5	한국마사회, 대한석탄공사, 한국조폐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해양환경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2	1	국민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3	29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산업기술기술평가원, 국립공원공단, (재)우체국금융개발원, 국립생태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연구재단

자료: 공기업·준정부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대부분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감사참여자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있었으나, 아래 사례와 같이 일부 기관은 부가서비스 제공에는 20~30점의 높은 점수를 부여하면서 감사참여자의 역량에는 5~10점을 부여하고 있어 감사수행팀의 전문성을 제대로 평가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회계감사와 관련성이 낮은 지표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안서 평가 시 감사참여자의 역량에 낮은 비중을 둔 사례**

-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적격심사 대상 선정 시 감사참여자 역량 미평가
- (한국국토정보공사) “2023~2025 회계감사 및 세무조정 용역” 제안서 평가기준에 부가협력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구체성(15점), 회계·세무 관련 연간 자문 및 교육 실시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15점) 등 비감사 서비스 제공에 30점을 배정한 반면,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및 구성원의 인적 우수성에는 10점만 배정
- (한국석유관리원) “2022~2024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 용역” 제안서 평가기준에 회계 관련 유용한 서비스의 주기적 제공 계획 등 비감사 서비스 제공에 20점을 배정한 반면,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에는 5점만 배정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재)우체국금융개발원) 부가서비스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등 지원 부문에 20점을 배정한 반면, 참여인력 구성 및 경력 부문에 10점만 배정

**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를 평가지표에 포함**

결산감사규칙 제6조에 따르면 회계감사인 등은 회계감사를 수행하면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당해

대상기관에 대한 회계기록과 재무제표 작성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참고로 민간부문에 적용되는 외부감사법 제6조에서도 감사대상 회사는 회계 감사인에게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되어있고, 이는 회계감사인이 스스로를 검증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회계감사를 위한 회계감사인을 선정할 때 재무제표 작성 또는 회계처리 자문 등 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항목은 선정 기준 또는 평가지표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대다수의 공기업·준정부기관(조사대상 87개 기관 중 76개 기관)은 [표 14]와 같이 회계자문, 교육과 같은 부가서비스 제공 계획 등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있었다.

[표 14] 회계자문 등 부가서비스를 평가지표에 포함한 기관 명세

(단위: 개)

구분	기관 수	회계자문 등 부가서비스를 평가지표에 포함한 기관	
		계	기관명
계	87	76	
시장형 공기업	14	12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가스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 (주)강원랜드
준시장형 공기업	18	15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전KPS(주), 한국광해광업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마사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대한석탄공사, 한전KDN(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해양환경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2	11	한국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3	38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립공원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재)우체국금융개발원, 국립생태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연구재단

자료: 공기업·준정부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평가지표 운영 사례

- (한국가스공사) 회계환경 변화에 대한 부가서비스 제공 계획(회계 관련 최신정보 및 자문서비스의 주기적 제공 포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회계 관련 업무 자문 및 교육계획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회계/세무 관련 자문 및 교육지원 등 부가서비스 제공 계획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컨설팅 서비스(회계·세무·자금운용 등) 내용 적정성, 컨설팅 서비스 방법의 적정성, 추가 지원 서비스 사항

#### 다. 감사품질과 관련성이 낮은 평가지표 설정 및 높은 배점 부여

회계감사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회계감사인이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고, 회계감사인 선정 시 이러한 요소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앞서 소개한 한국상장사협의회의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기준 표준예시” ([표 12] 참고)에서 회계법인 자체의 경영상태, 매출액 등의 일반적인 현황은 평가기준에 포함하지 않고 내부품질관리, 과거 수행업무의 적정성 등 실제 감사품질과 관련이 있는 사항을 통해 회계법인의 역량을 평가하게 하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회계감사인 선정 시 회계법인의 규모, 등록 공인 회계사의 수 등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능력이나 감사업무 수행팀의 역량과 관련이 적은 항목을 평가지표에 포함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별표 3] “감사품질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낮은 평가지표 운영 현황” 과 같이 한국석유공사 등 53개 기관이 회계법인의 경영상태(채무비율, 신용등급 등 3~20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37개 기관이 회계법인의 매출액(4~15점),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32개 기관이 등록 공인회계사 수(3~15점)를 평가지표에 포함하고 있었고, 평가지표에 위 3개 항목을 모두 포함한 기관도 6개에 이르고 있었다.

### 감사품질과 관련성이 낮은 평가지표 운영 사례

-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기술능력 평가 항목에 감사품질과 관련성이 낮은 대표적 항목인 신용등급(5~10점), 매출액(4~10점), 등록 공인회계사 수(3~10점), 회계교육 및 부가서비스(10~30점)를 모두 평가하면서 해당 지표들에 27~45점에 달하는 높은 점수 배정
- 반면, 감사품질에 중요한 감사참여자의 역량에 대해서는 10~15점만 부여하였고, 감사시간에 대해서도 5개 기관 중 2개 기관은 평가지표에 미포함

### 라. 법령과 다르게 과거 수행실적을 평가지표에 반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sup>6)</sup> 미만인 소규모 계약의 경우 기술능력 평가 시 수행실적을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회계법인 자체의 과거 유사기관 회계감사 수행실적은 실제 회계감사 수행팀의 수행실적과는 관련성이 낮아 회계감사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없고, 입찰 과정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과거 수행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더라도 회계법인의 수행실적이 아닌 회계감사 수행팀의 실적을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2019~2024회계연도 중 회계감사인 선정 시 평가한 기준을 분석한 결과, [별표 4] “제안서 평가기준에 수행실적을 포함한 기관 명세”와 같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포함한 41개 기관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데도 기술능력을 평가하면서 회계법인의 최근 회계감사 실적 또는 전체 매출액 규모(통상 감사, 세무, 기타 용역 등 구분 없이 총매출액으로 평가) 등의 수행실적을 평가항목에 포함하고 있었다.

6)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2024. 12. 24.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에 따른 소규모 계약 기준은 2억 3천만 원이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별표 1]의 적용을 받는 한국조폐공사 등 16개 기관은 제2호에 따라 6억 7천만 원의 기준이 적용됨

## 마. 소결

회계감사인 선정기준과 평가지표는 전문성과 독립성 등을 확보한 회계감사인을 선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항이나 대부분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각각의 방식으로 평가기준을 정하면서 감사품질과 관련성이 낮은 항목을 포함하여 높은 배점을 부여하거나 감사품질에 중요한 항목을 낮게 배점하는 등으로 회계감사 수행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전문성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회계자문 등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포함한 기관도 다수 확인되었다.

이는 공공기관운영법 제43조에서 회계감사인 선정기준을 감사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4년 현재까지 감사원이 결산감사규칙 등에 회계감사인 선정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관련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앞으로 회계감사 수행인력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회계감사인 선정기준과 평가지표를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 ③ 회계감사인 선정 시 관련 법규 미준수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회계감사인 선정 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3항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에 따라 국가계약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계감사인 선정과 관련한 결산감사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회계감사인을 선정하면서 계약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한 결과, 입찰공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 가. 입찰공고 기간 미준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다만 긴급한 경우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지침」 제15조에 제안서 모집공고를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10일 전까지 하도록 하는 등 [표 15]와 같이 10개 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다르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었다.

[표 15] 국가계약법과 다르게 모집공고 기간을 정한 기관 명세

기관명	규정 내용	기관명	규정 내용
▪ 근로복지공단	10일 전까지 공고	▪ 한국자산관리공사	7일 전에 공고
▪ 한국산업인력공단	10일 전까지 공고	▪ 축산물품질평가원	7일 이상 공고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0일 전까지 공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주일 이상 공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0일 전까지 공고	▪ 국립공원공단	1주일 이상 공고
▪ (재)우체국물류지원단	10일 전까지 공고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주 이상 공고

자료: 공기업·준정부기관 자체 선임위원회 운영규정 재구성

그리고 [표 16]과 같이 공무원연금공단 등 3개 기관은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회계감사 계약을 추진하면서 10일 미만으로 입찰공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6] 입찰공고기간이 10일 미만인 기관 명세

(단위: 원, 일)

연법	기관명	대상연도	낙찰자 선정방법	추정가격	최초 입찰공고 기준		
					입찰공고일	입찰마감일	공고기간
1	공무원연금공단	2020~2022	협상에 의한 계약	163,636,364	2020-05-08	2020-05-14	6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20~2022		135,000,000	2020-05-26	2020-06-01	6
3	축산물품질평가원	2019~2021		30,000,000	2019-04-12	2019-04-20	8

자료: 공기업·준정부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한전KDN(주)는 2018. 11. 1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sup>7)</sup> 이상인 2019~2021회계연도 회계감사 계약을 위해 입찰공고를 게시하면서 긴급한 사정이 없는 데도 같은 해 11. 23.까지 11일간만 공고하는 등 [표 17]과 같이 14개 기관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을 초과하고 통상 3년마다 정기적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있어 긴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40일 전에 공고를 하지 않아 제안서 작성 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sup>8)</sup>

7)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2020. 12. 30.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에 따라 한전KPS(주)에 적용되는 금액 기준은 2억 원임

8) 다만, 기획재정부에서 2020년 5월 이후 코로나-19 및 경제위기 극복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모든 입찰에 대해 긴급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계약지침을 완화한 바 있음

[표 17] 입찰공고기간이 40일 미만인 기관 명세

(단위: 원, 일)

구분	기관명	대상연도	낙찰자 선정방법	추정가액	입찰공고일	입찰마감일	공고기간 (일수)
1	한전KPS(주)	2020~2022	협상에 의한 계약	1,406,090,579	2019-11-27	2019-12-10	13
2	한전KDN(주)	2019~2021		683,220,000	2018-11-12	2018-11-23	11
		2022~2024		851,860,000	2021-11-18	2021-11-30	12
3	한국중부발전(주)	2019~2021		2,169,560,000	2018-11-21	2018-12-04	13
4	한국남부발전(주)	2019~2021		1,975,260,000	2018-11-16	2018-11-26	10
5	한국서부발전(주)	2019~2021		2,401,828,333	2018-12-04	2018-12-17	13
		2019~2024		2,199,402,190	2021-11-15	2021-11-29	14
6	한국동서발전(주)	2019~2021		2,005,000,000	2018-11-20	2018-11-30	10
7	한국남동발전(주)	2022~2024		2,337,755,814	2021-10-13	2021-11-02	20
8	한국토지주택공사	2021~2023		2,456,269,000	2021-04-08	2021-04-19	11
9	한국지역난방공사	2024~2026		2,736,675,000	2023-10-11	2023-11-01	21
10	한국광해광업공단	2024~2026		1,736,363,636	2024-04-01	2024-04-11	10
11	주택도시보증공사	2023~2025		1,368,818,182	2023-01-02	2023-01-17	15
12	(주)강원랜드	2023~2025		2,152,727,273	2022-10-25	2022-11-29	35
13	한국전력기술(주)	2021~2023	1,435,000,000	2021-11-05	2021-11-17	12	
		2024~2026	1,344,420,000	2023-11-02	2023-11-17	15	
14	한국수자원공사	2021~2023	1,319,400,000	2021-04-29	2021-05-18	19	

자료: 공기업·준정부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나. 회계감사인 선정기한 미준수와 보고 누락

구 결산감사규칙(2024. 9. 6. 감사원 규칙 제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회계감사인을 선정한 때에는 선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선정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원은 통보받은 회계감사인이 독립성 위배 등의 사유로 당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대상기관의 장에게 회계감사인의 재선

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규칙 제9조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감사원의 회계감사인 재선정 요구 기한(감사원에 회계감사인 선정을 통보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한 후 감사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감사원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9~2021회계연도 회계감사인 선정 시 결산 감사규칙에서 정한 기한에서 8일이 지난 2019. 7. 8.에 회계감사인을 선정하는 등 [표 18]과 같이 8개 기관이 규정과 다르게 회계연도 개시 후 6개월을 초과한 시점에 회계감사인을 선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8] 회계감사인 선정기한 미준수 현황

구분	공공기관명	대상연도	감사인 선정일	감사인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9~2021	2019-07-08	재채회계법인
2	한국조폐공사	2023~2025	2023-07-01	태회계법인
3	한국전기안전공사	2023~2025	2023-07-06	태회계법인
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1~2023	2021-07-06	재채회계법인
5	(재)우체국물류지원단	2019~2021	2019-07-02	태회계법인
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3~2025	2023-07-27	대대회계법인
7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2020~2022	2020-07-09	대대회계법인
8	한국고용정보원	2021~2023	2021-07-05	태회계법인
		2024~2026	2024-07-22	대래회계법인

자료: 공기업·준정부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더욱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선정기한을 넘겨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고도 감사원에는 선정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채 감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표 19]와 같이 한국남부발전(주) 등 9개 기관은 2019회계연도 이후 회계감사인을 선정하면서 감사원에 선정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감사계약을 체결한 후 감사원에 사후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9] 회계감사인 선정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 보고한 기관 명세

구분	공공기관명	대상연도	감사인 선정일	계약 체결일	선정결과 보고일 (기관→감사원)	계약 체결 후 보고
1	한국남부발전(주)	2019~2021	2018-12-11	2018-12-19	2019-01-30	○
		2022~2024	2021-12-28	2022-02-10	-	미보고
2	(주)강원랜드	2020~2022	2019-12-12	2019-12-24	2020-01-14	○
3	한국조폐공사	2020~2022	2020-05-26	2020-06-02	2020-06-03	○
4	한국도로교통공단	2020~2022	2020-04-28	2020-04-28	2020-05-14	○
		2023~2025	2023-04-25	2023-04-25	2023-05-04	○
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020~2022	2020-06-18	2020-06-18	2020-06-30	○
6	(재)우체국물류지원단	2019~2021	2019-07-02	2019-07-02	2019-07-15	○
7	국립공원공단	2022~2024	2022-06-24	2022-07-01	2022-07-07	○
8	국가철도공단	2021~2023	2021-06-24	2021-06-29	2021-06-29	○
9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9~2021	2019-07-08	2019-08-09	-	미보고
		2022~2024	2022-05-10	2022-05-13	2022-05-13	○

자료: 공기업·준정부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다. 소결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국가계약 관련 법령, 결산감사규칙을 위반하여 입찰을 공고하고, 기한 내 회계감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감사원에 선정결과를 제대로 통보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일부 확인되었다.

따라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앞으로 회계감사인 선정 시 국가계약 관련 법령과 결산감사규칙을 준수하고 국가계약 관련 법령에 맞게 내규를 보완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 2 회계감사 관리 및 수행 분야

회계감사는 독립적인 제3자인 회계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에 관해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제표 이용자의 신뢰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회계감사의 품질은 회계오류와 부정의 발견 가능성과 이에 대한 보고 가능성에 따라 결정되는데, 회계오류와 부정을 발견할 가능성은 회계감사인이 투입하는 노력, 특히 감사시간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며,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이 강화될수록 회계오류와 부정을 보고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부터 감사용역 계약서, 감사시간, 감사인력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시간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 독립성 실태 등을 분석하고, 감사조서를 제출받은 24개 기관의 감사조서 등을 검토하여 회계감사인의 중요성 금액 설정 등 감사계획과 수행이 적절한지 등을 검토하였다.

### 1) 감사시간 산정과 관리 강화 필요

회계감사는 회계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오류사항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을수록 그 품질이 향상되고, 오류사항을 발견할 확률은 회계감사인의 경험과 지식, 적용된 감사기법, 투입시간 등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회계감사인이 투입하는 감사시간이 감사위험에 비해 적거나 회계감사인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포함된 오류사항을 발견할 가능성이 줄어들어 감사품질이 낮아질 수 있다.<sup>9)</sup>

한편, 우리나라의 회계감사에 대해 회계감사인 간의 과당경쟁과 감사보수의

9)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평균감사투입시간 제공효과 분석」(박종성·곽승욱, 회계와 정책연구 제23권 제4호, 2018)

덤핑 등으로 감사시간이 다른 나라의 감사시간에 비해 적고, 그로 인해 감사 품질이 저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sup>10)</sup>

특히 2013년, 2013년, 2016년 등의 대규모 분식회계로 인해 투자자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기업 경영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으며, 스위스 국제경영 개발원 등이 실시한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이 미흡한 수준에 머무는 등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sup>11)</sup>

이와 같은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충분하지 못한 감사시간이 지적되었고 적정 수준의 감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감사시간을 투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정부는 2017. 10. 31. 외부감사법을 개정하여 표준감사시간 제를 도입하고 이를 민간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외부감사법 제16조의2에 따르면 표준감사시간<sup>12)</sup>은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회계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감사시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표준감사시간은 2019회계연도부터 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는 주식회사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회계감사인이 회사에 필요한 감사투입시간을 결정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평균적 감사시간으로서 적정 수준의 감사시간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민간부문의 경우 [표 20]과 같이 2023회계연도 상장기업 평균 자산 총액이 2018회계연도 대비 11.9% 증가하는 동안 감사시간은 46.0% 증가하여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이후 감사시간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0) 우리나라의 감사시간은 일본의 37~83%, 미국의 20~41% 수준임[「최근 3년간 외부감사 투입시간 등 현황 분석」(금융감독원, 2017. 7. 26.)]

11)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17. 1. 20.)

12)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표준감사시간」 제3조에 따르면 표준감사시간을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적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하여야 하는 감사시간’으로 정의

[표 20] 2018~2023년 상장기업 평균 감사시간 및 자산총액

(단위: 시간, 억 원, %)

구분	2018년(A)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B)	증가율 (B/A-1)*100
평균 감사시간	1,838	2,164	2,373	2,447	2,687	2,683	46.0
평균 자산총액	16,455	16,833	17,431	18,622	18,476	18,407	11.9

자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료 재구성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는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으로부터 회계감사 계약서, 감사시간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시간에 대한 계획·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실제 감사시간이 적절한 수준인지를 민간부문과의 비교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가. 감사품질 확보를 위한 적정 감사시간 투입 필요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시간 현황 분석

감사계약서 등을 통해 감사시간이 확인되는 50개 공기업·준정부기관<sup>13)</sup>의 2023회계연도 평균 감사시간은 [표 21]과 같이 3,435시간이며, 시장형 공기업(10,387시간), 준시장형 공기업(3,194시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956시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553시간) 순으로 분석되었다.

[표 21]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별 평균 감사시간 및 자산총액

(단위: 시간, 억 원)

구분	평균	공기업		준정부기관	
		시장형(11개)	준시장형(13개)	기금관리형(4개)	위탁집행형(22개)
평균 감사시간	3,435	10,387	3,194	956	553
평균 자산총액	146,873	322,720	235,464	81,869	18,420

자료: 공기업·준정부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3) 계약서·제안서 등에 감사시간을 명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2개 기관 중 국가기금에 해당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공공기관 회계감사 품질 제고 방안 연구」(한국행정학회, 2024. 12.)에서 감사시간 분석에 이상수치(outlier)를 보인다고 언급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제외한 50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

그리고 [표 22]와 같이 자산규모가 클수록 많은 감사시간이 투입되는 경향이 있는데, 2023회계연도 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가장 많은 감사시간을 설정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자산총액 138조 8,383억 원)로 31,957시간이고, 가장 적은 감사시간을 설정한 기관은 (재)우체국금융개발원(자산총액 164억 원)으로 144시간이며, 감사시간이 500시간 미만인 기관은 11개로 분석되었다.

[표 2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산총액 및 감사시간 분포

(단위: 개, 시간)

자산총액 \ 감사시간	계	500시간 미만	500시간 이상	1,000시간 이상	2,000시간 이상	5,000시간 이상	10,000시간 이상	평균 감사시간
계	50	11	13	6	8	9	3	3,435
20조 원 이상	6	-	-	-	2	1	3	12,840
10조 원 이상	11	-	1	3	1	6	-	4,378
1조 원 이상	10	1	2	3	2	2	-	2,792
5천억 원 이상	8	2	3	-	3	-	-	1,559
5천억 원 미만	15	8	7	-	-	-	-	412

자료: 공기업·준정부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시간과 민간부문의 표준감사시간 비교

50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간부문의 표준감사시간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표준 감사시간을 산정<sup>14)</sup>하고 이를 실제 감사시간과 비교하면, [표 23], [별표 5] “기관별 계약감사시간과 표준감사시간 비교(50개 기관)”와 같이 평균 계약감사시간은 평균 표준감사시간 대비 공기업은 94.4%, 준정부기관은 40.5%로 분석되었다.

[표 23]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감사시간과 표준감사시간 비교

(단위: 개, 시간)

계	기관 수	평균 계약감사시간(A)	평균 표준감사시간(B)	비율(A/B×100)
공기업·준정부기관 계	50	3,435	4,091	84.0
공기업	24	6,491	6,879	94.4
준정부기관	26	615	1,517	40.5

자료: 공기업·준정부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4) 「공공기관 회계감사 품질 제고 방안 연구」(한국행정학회, 2024. 12.)의 기관별 표준감사시간을 참고했으며 상장 기관과 비상장기관 중 시장형 공기업은 상장사 기준, 그 외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사 기준으로 표준감사시간을 산정

세부적으로 보면, [표 24]와 같이 시장형 공기업의 계약감사시간은 표준감사시간 대비 86.9%, 준시장형 공기업은 123.5% 수준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공공기관 중 코스피에 상장되어 외부감사법에 따른 표준감사시간을 적용받는 7개 공기업<sup>15)</sup> (시장형 4개, 준시장형 3개)의 표준감사시간(12,822시간) 대비 계약감사시간(11,124시간) 비율은 평균 86.8%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표 24] 공기업의 계약감사시간과 표준감사시간 비교

(단위: 개, 시간, %)

계	기관 수	평균 계약감사시간(A)	평균 표준감사시간(B)	비율(A/B×100)
공기업 계	24	6,491	6,879	94.4
시장형 공기업	11	10,387	11,951	86.9
준시장형 공기업	13	3,194	2,587	123.5

자료: 공기업·준정부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반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계약감사시간은 [표 25]와 같이 표준감사시간 대비 27.8%,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47.4% 수준으로 분석 대상인 모든 준정부기관의 계약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미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공기업과 민간부문 대비 감사시간을 적게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5] 준정부기관의 계약감사시간과 표준감사시간 비교

(단위: 개, 시간, %)

계	기관 수	평균 계약감사시간(A)	평균 표준감사시간(B)	비율(A/B×100)
준정부기관 계	26	615	1,517	40.5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4	956	3,443	27.8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2	553	1,167	47.4

자료: 공기업·준정부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5) 시장형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주)강원랜드, 준시장형 공기업: 한전KPS(주), 한국전력기술(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 나. 감사시간 관리 강화 필요

(1) 회계감사인 선임 이전에 감사시간을 문서화하지 않는 등 관련 법령 위반

공공기관운영법 제43조의3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또는 선임위원회가 회계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도록 한 외부감사법 제10조 제5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감사위원회 또는 선임위원회가 회계감사인 선임 이전에 회계감사인이 충실한 회계감사를 위해 필요한 적정시간을 정하여 과도하게 적은 감사시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입찰공고 이전에 적정감사시간 등을 미리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16)</sup>

한편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위원회 또는 선임위원회에서 감사계약 체결 이전에 감사시간을 산정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표 26]과 같이 한국전력공사 등 7개 상장사를 비롯한 22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감사 및 감사위원회를 통해 입찰공고 전에 감사시간을 산정하여 문서화하고 있었다.

[표 26] 적정감사시간을 사전에 산정하는 기관 명세

(단위: 개)

구분	기관 수	적정감사시간 사전산정 기관	
		계	기관명
계	87	22	
시장형 공기업	14	8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가스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주)강원랜드
준시장형 공기업	18	8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전KPS(주), 한국마사회,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전력기술(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2	2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3	4	국가철도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자료: 공기업·준정부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6) 한국상장사협의회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표준예시”에 따르면 외부감사법 제10조 제5항에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수·감사시간 등을 문서화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충실한 감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감사자원 투입을 보장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해당 사항은 회계감사인 선정 이전에 문서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

### 입찰공고 이전에 감사시간을 산정한 기관 사례

- **(한국전력공사)** 2021년 제8차 감사위원회에서 “2022~2024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선임계획”을 의결하였고, 표준감사시간제(외부감사법 제16조의2) 도입에 따른 표준감사시간을 고려하여 3년간 93,900시간 산출(이후 회계감사인과 3년간 96,717시간으로 협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2024년 제2차 감사위원회에서 “2024~2026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인 선임계획(안)”을 의결하면서 감사위원회는 감사품질 확보를 위해 민간부문 표준감사시간을 참고하여 2024~2026회계연도 최저감사시간으로 연평균 7,542시간 산정(이후 회계감사인 선정 시 연평균 9,110시간으로 결정)

그러나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65개 기관은 감사위원회 또는 선임위원회에서 회계감사인 선임 이전에 감사시간을 문서화하지 않고 있었고, 특히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43개 기관 중 39개 기관이 감사시간을 문서화하지 않는 등 공공기관운영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2) 감사시간 협의 없이 계약체결 및 사후관리 미흡

공공기관운영법 제43조의3 제3항과 외부감사법 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또는 선임위원회가 회계감사인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 등을 문서화하도록 되어있고, 감사시간은 감사보수 산정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회계감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회계감사 계약 체결 이전에 회계감사인과 예상 감사시간을 협의하여 계약서 등에 명시하고, 회계감사 실시 후 회계감사인이 당초 협의한 감사시간을 충실히 투입하여 회계감사를 수행하였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공공기관운영법에서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으나 외부감사법 제10조 제6항에 따르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전에 정한 감사시간, 감사인력 등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고, 외부감사법 제18조에 따르면 회계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외부감사 참여 인원수, 감사내용 및 소요시간 등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있는 등 사후 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계약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외부감사

계약서(예시)」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예시에도 감사단계별·감사참여자별 감사 시간 상세 투입내역을 기재하고 예상 감사시간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어 회계감사 계약 체결 전에 회계감사인과 감사의뢰인 간 감사시간에 대해 협의하고, 실제 감사 시간이 예상 감사시간과 차이가 나는 경우 감사의뢰인이 회계감사인에게 발생한 차이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거나 감사보수를 가감 조정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등 감사시간 사후관리 사항도 감사계약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표 27]과 같이 2023회계연도 기준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52개 기관만이 제안서 및 계약서에 예상 감사시간을 포함하고 있었고, 나머지 35개 기관은 회계감사인과 감사시간에 대해 협의하지 않은 채 감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7] 감사시간을 협의하여 계약내용에 반영한 기관 명세

(단위: 개)

구분	기관 수	계약감사시간 협의 기관	
		계	기관명
계	87	52	
시장형 공기업	14	11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가스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주)강원랜드
준시장형 공기업	18	13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전KPS(주), 한국광해광업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마사회, 주식회사 에스알,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2	6	한국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3	22	국가철도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국제협력단,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자료: 공기업·준정부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회계감사인과 협의하여 감사계약서 등에 감사시간을 정한 52개 기관 중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 시 실제 투입한 감사시간을 파악하는 기관은 17개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35개 기관은 회계감사인이 제안서, 계약서에 반영한 감사시간을 실제 투입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 감사시간을 사후관리하는 기관 사례

- (한국가스공사) 2024년 제4차 감사위원회에 “제41기(2023회계연도) 결산감사” 보고 및 의결, 외부 회계감사인 직급별 감사투입시간과 계약시간 비교
- (한국전력기술) 2024년 제1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에 “2023회계연도 회계감사인 사후평가” 보고, 감사시간·감사투입인력 등의 계획과 실적 차이 분석
- (한국소비자원) 2024년 2월 회계감사 종료 후 회계감사용역 검수 실시,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참여자별(업무수행이사, 참여공인회계사, 품질관리검토자)·업무별(감사계획, 중간감사, 재고실사입회, 실증절차 등) 투입시간이 표시된 “감사업무시간 집계표” 수령·검토

참고로 회계감사 시 실제 투입된 감사시간을 파악하는 17개 기관의 경우 [별표 6] “기관별 실제감사시간과 계약감사시간 비교(17개 기관)” 와 같이 개별기관별로 실제감사시간은 계약감사시간 대비 94.2~116.7%, 전체적으로는 99.9% 수준으로 회계감사인과 협의한 감사시간은 대체로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다. 소결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자산구조, 수익구조가 민간기업과 다른 회계특성이 있어 민간기업의 감사시간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시간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감사시간이 증가할 경우 회계감사 보수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준정부기관의 경우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비해 많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고, 상장 공기업 등 일부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적정 감사시간을 설계하고 회계감사인과 이를 협의하여 계약 내용에 반영하고 사후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아 충실한 회계감사를 위한 회계감사인의 노력을 담보할 수 없어 낮은 회계신뢰성의 한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앞으로 민간부문의 표준감사시간, 유사 기업의 감사시간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적정 감사시간을 정하고 회계감사인 선임 시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예정 감사시간을 확정하는 한편, 실제 감사시간을 사후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 ② 회계감사인 독립성 확보 미흡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 수행 시 피감사기관과의 이해상충을 배제하고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감사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은 회계감사인이 외부의 압력이나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재무제표는 투자자와 채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중요한 의사결정 자료로 사용되므로 회계감사인은 피감사기관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회계 오류와 부정을 발견하고 이를 적절히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사항으로 피감사인과 밀접한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 회계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에 도움을 제공하고 이를 감사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sup>17)</sup>

이에 따라 결산감사규칙 제6조, 제9조에서 회계감사인 및 회계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되어있고,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 당해 대상기관에 대한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운영법 제43조의3에서도 회계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법 제9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도록 하여 장기간 동일한 회계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회계감사인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는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인 선임 내역 및 감사계약서(과업지시서 포함) 등을 분석하여 동일 회계감사인의 연속감사 제한, 회계감사 수행 중 회계처리 자문 금지 등 독립성 확보 규정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17) 「외부감사 수행시 이해상충 관련 유의사항 안내」(금융감독원, 2018. 10. 4.)

### 가. 동일이사의 연속 감사 수행에 대한 관리 부실

공공기관운영법 제43조의3 제3항과 외부감사법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회계법인인 회계감사인 소속의 동일이사가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sup>18)</sup> 이는 회계감사인이 특정 기업과 지속적으로 장기간 관계를 맺으면서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장치이다.

따라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같은 회계감사인과 6년차 감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해당 회계감사인 소속 동일이사가 감사업무에 참여하지 않도록 감사투입인력을 관리하여야 하고, 회계감사인 역시 자발적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에 [가]회계법인을 2017회계연도부터 2019회계연도까지의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2020년에 [가]회계법인을 다시 2020회계연도부터 2022회계연도까지의 회계감사인으로 선정하면서 담당이사 교체없이 6년 동안 동일이사가 감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표 28]과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4개 기관과 [가]회계법인 등 6개 회계법인이 공공기관운영법을 위반하여 동일이사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업무를 담당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8] 동일이사 6개 회계연도 연속 감사수행 현황

구분	공공기관명	대상연도	회계법인명	감사담당 공인회계사
1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2022	[가]회계법인	A
2	한국장학재단	2016~2021	[가]회계법인	B
3	한국전기안전공사	2014~2019	[가]회계법인	C
4	한국부동산원	2014~2019	[가]회계법인	D
5	한국교통안전공단	2019~2024	[가]회계법인	E

18)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이사에게는 그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음

6	한국산업인력공단	2017~2022	개회계법인	E
7	한국소비자원	2016~2021	개회계법인	E
8	국립공원공단	2016~2021	개회계법인	F
9	축산물품질평가원	2016~2021	개회계법인	G
1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6~2021	개회계법인	H
11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2020	개회계법인	H
1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15~2020	개회계법인	I
13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017~2022	개회계법인	J
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2022	개회계법인	K

자료: 공기업·준정부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나. 결산 지원, 회계처리 자문 등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 독립성 훼손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3조에 따르면 기관장에게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있다고 되어있고, 결산감사규칙 제6조에 따르면 회계감사인은 회계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 당해 대상기관에 대한 회계기록과 재무제표 작성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결산감사규칙 등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감사 시 적용되는 「회계감사기준서」 200(독립된 회계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14에 따르면 회계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외부감사법 제6조 등 감사와 관련된 독립성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되어있고, 외부감사법 제6조에 따르면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회사의 대표이사과 회계담당 임원에게 있으며, 회계감사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는 해당 기관의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8조 제6항에 따르면 감사인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행위,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방법의 결정

에 관여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되고, 해당 회사는 감사인에게 이러한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재무제표 대리작성 및 회계처리 자문 금지 규정은 회계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 재무제표 작성 등에 관여한 내용을 스스로 검증하는 위험(자기검증위험)을 방지하여 감사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감사 용역의 과업 내용을 분석한 결과, [표 29]와 같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50개 기관이 감사계약 체결 시 회계자문 등을 과업 범위에 포함하여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었다.

[표 29] 회계감사 과업에 회계자문을 포함한 기관 명세

(단위: 개)

구분	기관 수	회계감사 과업에 회계자문을 포함한 기관	
		계	기관명
계	87	50	
시장형 공기업	14	-	-
준시장형 공기업	18	6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마사회, 대한석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2	9	한국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3	35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산업기술기술평가원, 국립공원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재)우체국금융개발원, 국립생태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연구재단

자료: 공기업·준정부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반면, 일부 회계감사인의 경우 피감사기관에서 과업지시서 등에 상시 또는 연중 회계자문을 명시하였으나 기술협상 등의 과정에서 회계처리 자문 등이 독립성 위배의 소지가 있음을 밝히고 과업내용을 변경한 사례도 있었다.

## 기술협상 등 과정에서 회계자문 관련 과업내용을 변경한 사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회계감사인은 “2022~2024회계연도 회계감사 및 법인세 세무조정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연중 회계·세무·자금 운용에 대한 자문 및 자료 제공”이 과업으로 반영된 것에 대해 기술협상 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공정한 재무제표 작성 관련 회계자문 금지 안내” 및 「공인회계사법」 제21조의 규정을 근거로 관련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술협상 문서에 명시
- **(한국고용정보원)** 회계감사인은 “2024~2026회계연도 회계감사용역”의 제안요청서에 “연중 회계/세무 및 자금운용 관련 자문 및 자료제공”이 과업으로 반영된 것에 대해 “반기 기준 재무제표 약식 검토”로 변경
- **(신용보증기금)** “2023~2025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 용역”의 제안요청서에 “기금의 회계처리 및 세무관련 제도 등에 대한 자문 수행”이 과업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2023. 6. 28. 실제 계약시 자문업무에 대해 “국내의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계 및 세무 관련 제도 및 이론, 회계기준 변경 등과 관련한 회계 정보의 이용”으로 내용을 변경

## 다. 소결

일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회계감사인 소속 동일이사가 6개 회계연도 연속으로 회계감사를 담당하는데도 교체되도록 조치하지 않고, 회계감사용역 과업에 연중 또는 상시 회계자문을 포함하는 등 회계감사인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다.

특히 과업지시서 등에 회계처리 자문을 포함하는 것은 회계감사인 선정 시 평가지표에 회계자문 또는 서비스 제공사항을 반영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회계감사인에 대한 회계자문 요구가 「회계감사기준」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고 회계감사인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각 기관이 인식하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민간부문의 경우 외부감사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상장기업과 대규모 비상장기업 등 공공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6년) 자율적으로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게 한 후, 이후 3년간은 금융감독원이 회계감사인을 지정하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회계감사인과 피감사기업 간의 유착 가능성을 줄이고 감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감사인 독립성 관련 제도

를 강화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공공부문에서도 지속적으로 회계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앞으로 회계감사인 선임 및 감사계약 체결 시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과업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공공기관운영법과 결산감사규칙을 준수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 ③ 신속한 결산과 감사 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필요

공공기관운영법 제43조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21년 12월 그동안 감사원의 결산검사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회계오류가 지속 발견되고 이러한 중대한 회계오류는 경영평가 결과 수정, 분식회계 논란 등을 초래함에 따라 회계 신뢰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운영 중인 민간부문을 벤치마킹하여 공공기관 직원의 회계역량, 내부회계 책임 및 외부 회계감독 등을 강화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회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회계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그리고 위 개선방안 중 하나로 기획재정부는 당시 민간부문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재무제표에 대한 대표이사의 작성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감사 前 재무제표의 증권선물위원회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나, 공공기관은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불명확하고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가 없어 대리작성 문제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사유로 2022년 7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을 개정하여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기관장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한 경우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결산서를 지체없이 제출[공공기관결산시스템<sup>19</sup>(이하 “PIFRS” 라 한다)을 이용해 제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법령에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기관장의 책임하에 지체없이 결산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결산서를

19) 2011회계연도부터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공공기관 회계기준 변경에 대응하고 결산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자료 입출력 방식 개선과 시스템 간 연계로 오류를 최소화한 결산업무 처리 시스템(Public Institutions Financial Reporting Systems)

회계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2022회계연도 결산부터는 이와 동시에 기획재정부 장관 등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 민간부문의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관련 규정

외부감사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르면 [표 30]과 같이 외부 감사법이 적용되는 기업은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자기 책임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감사 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정기주주총회일 6주 전) 내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이 중 주권상장법인 등은 동시에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기한 내에 미제출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공시하여야 하고, 법규 미숙지 또는 부주의 등으로 감사 前 재무제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서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 또는 제출처를 오인하는 등 제출의무를 위반하면 금융감독원은 회계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표 30] 외부감사법(제8조 등)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감사인 제출	제출대상	▪ 외부감사법 적용 기업
	제출기한	▪ 일반회사: 정기주주총회 개최 6주 전(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4주 전)
증권선물 위원회 제출	제출대상	▪ 주권상장법인, 직전 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비상장법인, 금융회사 등
	제출서류	▪ ① 재무상태표, ② (포괄)손익계산서, ③ 자본변동표, ④ 현금흐름표, ⑤ 주식
	제출방식	▪ 비상장법인: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제출 ▪ 상장법인: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제출
	제출기한	▪ 일반회사: 정기주주총회 개최 6주 전(연결재무제표는 정기총회 개최 4주 전) ▪ 외부감사인에 대한 재무제표 제출기한(증권선물위원회 제출기한과 같음) ※ 회계감사인의 현장감사 착수일이 감사 전 재무제표 법정 제출기한보다 빠르더라도 회계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현장감사 착수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해야 함

자료: 외부감사법 관련 조문 재구성

### 나. 회계감사인의 현장감사 착수 후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기관의 재정 상황을 정부와 국민에게 정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재무제표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작성할 책임이 있으

므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착수 전에 감사 前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는 회계감사인이 입증감사 절차를 수행할 충분한 감사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이 2022회계연도와 2023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감사인에게 감사 前 재무제표를 제출한 시기를 분석한 결과, [표 31]과 같이 84개<sup>20)</sup>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연도 1. 12.에서 2. 15. 사이에 감사 前 재무제표를 회계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있었고, 분석대상 기관 중 54.2%는 1월, 45.8%는 2월에 감사 前 재무제표를 제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별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현황

(단위: 개, %)

구 분	2022~2023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소계	1월 제출	2월 제출	소계	1월 제출	2월 제출	소계	1월 제출	2월 제출	
계	기관수	168	91	77	84	44	40	84	47	37
	비율	100	54.2	45.8	100	52.4	47.6	100	56.0	44.0
시장형 공기업	기관수	28	13	15	14	6	8	14	7	7
	비율	100	46.4	53.6	100	42.9	57.1	100	50.0	50.0
준시장형 공기업	기관수	36	26	10	18	13	5	18	13	5
	비율	100	72.2	27.8	100	72.2	27.8	100	72.2	27.8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기관수	18	15	3	9	8	1	9	7	2
	비율	100	83.3	16.7	100	88.9	11.1	100	77.8	22.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관수	86	37	49	43	17	26	43	20	23
	비율	100	43.0	57.0	100	39.5	60.5	100	46.5	53.5

자료: 공기업·준정부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세부적으로 보면, 준시장형 공기업은 72.2%,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83.3%가 1월에 감사 前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대체로 회계연도 종료 후 신속하게 회계자료를 제출한 반면, 시장형 공기업의 53.6%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57.0%가 2월에 감사 前 재무제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자산규모가

20)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3개 기관의 경우 국가기금에 해당하여 여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세부 일정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

크고 복잡한 회계와 재무구조, 다양한 사업부문 등으로 자체결산이 다소 늦어지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정부 위탁사업을 집행하는 단순한 사업구조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을 늦춰 2월 중에 회계감사를 착수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감사 前 재무제표도 2월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분석대상 84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표 32]와 같이 매년 10개 기관은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착수하였는데도 회계감사인에게 감사 前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착수 후 1~22일이 지나 제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 대부분이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에서 발생하였는데 공기업의 규모 및 복잡한 회계처리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감사 前 재무제표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계감사인이 현장감사를 착수함에 따라 충실한 감사계획 수립, 입증감사 절차의 수행이 제한될 수 있었고, 회계감사인이 직접 재무제표의 일부를 작성할 우려도 있었다.

[표 32] 회계감사인의 현장감사 착수 후 감사 前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관 현황

(단위: 개, 건, 일)

구분	유형별 기관수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지연제출 건수	지연제출 일수(범위)	지연제출 건수	지연제출 일수(범위)
계	84	10	1~22	10	1~18
시장형 공기업	14	5	2~22	4	3~18
준시장형 공기업	18	4	1~9	4	1~4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9	-	-	1	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3	1	1	1	8

자료: 공기업·준정부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현장감사 착수 후 감사 前 재무제표를 제출한 사례 예시**

- (한국수력원자력) 회계감사인이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2023. 1. 30. 현장감사를 착수하였으나 14일이 지난 2023. 2. 13. 감사 前 재무제표를 회계감사인에게 제출. 2023회계연도의 경우에도 회계감사인이 2024. 2. 5. 현장감사에 착수하였으나 3일이 지난 2024. 2. 8.에 감사 前 재무제표를 제출
- (한국지역난방공사) 회계감사인이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2023. 1. 27. 현장감사를 착수하였으나 19일이 지난 2023. 2. 15.이 되어서야 주석이 포함된 감사 前 재무제표를 회계감사인에게 제출. 2023회계연도의 경우에도 회계감사인이 2024. 1. 26. 현장감사에 착수하였으나 18일이 지난 2024. 2. 13.이 되어서야 주석이 포함된 감사 前 재무제표를 제출

#### 다. 감사 前 재무제표를 주무기관의 장 등에게 지연 제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 제43조,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4조에 따라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회계연도의 감사 前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에게 제출하고, 동시에 PIFRS를 통해 기획재정부 장관, 주무기관의 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기업·준정부기관이 2022회계연도와 2023회계연도 종료 후 PIFRS를 통해 기획재정부 장관, 주무기관의 장에게 감사 前 재무제표를 제출한 시점을 분석한 결과, [표 33]과 같이 84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연도별로 47개(55.9%) 기관은 회계감사인에게 감사 前 재무제표를 제출하면서 같은 날 PIFRS를 통해 주무기관의 장에게도 제출하였으나, 14개(16.7%) 기관은 회계감사인에게 감사 前 재무제표를 제출하고서 7일에서 63일이 지난 후 PIFRS에 입력하는 등 기획재정부 장관, 주무기관의 장에게 지연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무기관 등의 검토가 소홀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었다.

[표 33] 감사 前 재무제표의 회계감사인과 PIFRS 제출일 간의 차이 분석

(단위: 개, 건, %)

구 분	분석대상 기관 수	PIFRS에 먼저 제출	같은 날 제출	감사인 제출 후 7일 이내 PIFRS 제출	감사인 제출 후 7일 초과 PIFRS 제출
계	168	24	94	22	28
(비율)	100	14.3	55.9	13.1	16.7
2022회계연도	84	12	47	11	14
2023회계연도	84	12	47	11	14

자료: 공기업·준정부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PIFRS에 감사 前 재무제표를 지연 제출한 사례 예시

- (한국관광공사) 2023. 1. 30.과 2024. 1. 26. 감사 前 재무제표를 회계감사인에게 제출하고도 각각 21일과 3일이 지난 2023. 2. 20.과 2024. 1. 29.에서야 PIFRS를 통해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감사 前 재무제표를 2023. 1. 30.과 2024. 1. 30. 회계감사인에게 제출하고도 각각 15일과 17일이 지난 2023. 2. 14.과 2024. 2. 16.에 PIFRS를 통해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

라.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지연 발행

감사보고서 작성 기간(현장감사 종료 후~감사보고서 발행일)은 감사대상 기관의 규모나 사업 부문, 해외 자회사 수 등에 따른 회계 및 재무구조의 복잡성, 회계 감사인의 전문성과 경험, 내부 품질관리체계 등에 따라 달라진다.

84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인이 2022회계연도와 2023회계연도 회계감사 시 기관 유형별 감사보고서 작성 기간은 [표 34]와 같이 평균 14.2일에서 31.6일이 소요되었고, 공기업은 사업내용·수익구조 등이 복잡하여 감사보고서 작성 기간이 준정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4] 공공기관 유형별 감사보고서 작성 기간

(단위: 개, 일)

구 분	유형별 기관 수	감사보고서 평균 작성 기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시장형 공기업	14	31.0	31.6
준시장형 공기업	18	26.9	27.9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9	15.1	18.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3	14.2	15.5

자료: 공기업·준정부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구 공공기관운영법(2024. 3. 26. 법률 제2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에 따르면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다음연도 2월 말까지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재무제표와 부속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므로 2월 말 전에는 감사보고서가 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84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2회계연도와 2023회계연도 감사보고서 발행일을 분석한 결과, [표 35]와 같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 지연, 회계감사인의 기말감사 일정과 감사보고서 작성 지연 등으로 3월 중에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기관이 연평균 23개(2개 회계연도 46개)였고, 특히 14개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12개 기관이 3월 중에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5] 감사보고서 지연발행 현황

(단위: 개, 일)

구 분	회계연도	전체 기관 수	감사보고서 지연발행	
			기관 수	평균 지연발행 일수
계	2022	84	23	12
	2023	84	23	11
시장형 공기업	2022	14	12	14
	2023	14	12	13
준시장형 공기업	2022	18	9	9
	2023	18	9	9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022	9	-	-
	2023	9	-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22	43	2	15
	2023	43	2	11

자료: 공기업·준정부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이로 인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 제17조 및 제43조에 따라 이사회에 결산안의 심의·의결을 받고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결산서(감사보고서 포함)를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표 35]와 같이 감사보고서 지연발행 등으로 2022회계연도와 2023회계연도의 감사보고서가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발행되지 못한 기관들은 결산서 제출 기한(2월 말)을 맞추기 위해 감사결과 및 감사의견이 반영되기 이전의 결산 내역을 우선 기획재정부 또는 주무기관에게 제출하고 감사보고서가 발행된 이후 이를 보완하는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 감사보고서 지연발행 사례

- **(주택도시보증공사)** 2022회계연도의 경우 회계감사인의 기말감사가 2023. 2. 3. 종료된 후 2. 13. 이사회에서 결산을 심의·의결하고 3. 9. 감사보고서를 발행, 2023회계연도의 경우 회계감사인의 기말감사가 2024. 2. 2. 종료된 후 2. 14. 이사회에서 결산을 심의·의결하였고 3. 8. 감사보고서를 발행, 2월 말 기획재정부에 감사의견 없는 결산서를 우선 제출한 후 3월 중 감사보고서 보완 제출
- **(한국가스공사)** 2022회계연도의 경우 회계감사인의 기말감사가 2023. 2. 17. 종료된 후 2. 24. 이사회에서 결산을 심의·의결하고 3. 21. 감사보고서를 발행. 2023회계연도의 경우 회계감사인의 기말감사가 2024. 2. 8. 종료된 후 2. 27. 이사회에서 결산을 심의·의결하였고 3. 20. 감사보고서를 발행, 2월 말 기획재정부에 감사의견 없는 결산서를 우선 제출한 후 3월 중 감사보고서 보완 제출

#### 마. 소결

일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자체결산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회계감사인에게 감사 前 재무제표의 제출도 지연되거나, 회계감사인과의 감사 일정 협의 과정에서 기관에 대한 감사 일정이 지연되고 감사보고서 작성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으로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등 촉박한 회계감사 일정으로 인해 입증감사 절차가 충실하게 수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고,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어 기획재정부 및 주무기관의 결산서 검토가 소홀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었다.

다만, 2024. 3. 26. 공공기관운영법 제43조가 개정되어 2024회계연도 결산부터는 기획재정부, 주무기관에 대한 결산서 제출일이 2월 말에서 3. 15.로 늦춰져 이러한 문제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촉박한 감사 일정 등을 고려할 때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자체결산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회계감사인과의 감사 일정 협의를 통해 회계감사인의 감사시간을 보장하면서 감사보고서 발행일을 앞당기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앞으로 회계감사인이 충분한 입증감사 시간을 확보하고 이사회, 주무기관 등의 심의·검토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결산 능력 향상, 회계연도 중 지속적인 회계처리 점검 등을 통해 신속하게 결산을 마무리하고 회계감사인과의 감사일정 협의를 통해 감사보고서 발행일을 앞당기는 등 결산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 ④ 회계감사인의 중요성 기준 설정 시 공공기관 회계특성 고려 필요

「회계감사기준서」 320(감사의 계획수립과 수행에 있어서의 중요성) 문단 2와 문단 4에 따르면 회계감사에서 회계처리 누락 등 왜곡표시가 재무제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경우에 회계적으로 중요하다고 간주되며, 재무제표 이용자는 재무제표가 중요성 수준에서 작성·표시되고 회계감사가 이루어진다고 인식하므로, 중요성 금액은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는 허용 가능한 오류금액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리고 중요성 개념은 회계감사인이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식별된 왜곡표시가 감사에 미치는 영향과 미수정 왜곡표시가 있는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감사보고서에 표명할 의견을 형성할 때 적용되어(「회계감사기준서」 320 문단 5) 회계감사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위험평가절차의 시기와 범위를 결정하고,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등 회계감사인이 감사절차를 설계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회계감사기준서」 320 문단 6)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 시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조서를 제출받은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회계감사인의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 금액 설정 실태를 분석하고 산정에 오류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였다.

##### 가. 중요성 금액을 높게 설정하여 감사위험이 증가할 우려

중요성 금액의 결정은 전문가적 판단이 수반되고,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 결정은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총매출, 매출총이익, 순이익 등과 같은 이

익의 범주, 총자본이나 순자산가치 등 적합한 벤치마크 대상에 적절한 경험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회계감사기준서」 320 문단 A4, A5)

한국공인회계사회의 「Audit Guide」(2700)에서 [그림 2]와 같이 중요성은 기준 금액에 백분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데, 기준금액은 기업의 소유구조와 자본조달 방법, 기업의 성격과 수명주기, 기준금액의 상대적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총자산과 순자산, 총매출과 세전손익 등에서 선택하고, 백분율은 재무제표 이용자, 외부차입금 비율 및 회사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따른 적정 비율을 선택하도록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2] 중요성 금액 산정 방법 예시

중요성 금액 = 기준금액 × 백분율	
기준금액	백분율
<p>&lt;고려할 요소 및 사례&gt;</p> <p>① 기업의 소유구조·자본조달방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차입금 비율 ↑</li> </ul> <p>⇒ 자산 및 자산청구권에 중점</p> <p>② 기업의 성격, 수명주기, 기업이 속한 산업 및 경제환경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리법인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li> <li>▪ 자산기반회사 ⇒ 순자산</li> <li>▪ 비영리기업 ⇒ 총자산 또는 총비용</li> <li>▪ 세전이익↓ ⇒ 총매출 및 총자산 등</li> </ul> <p>③ 기준금액의 상대적 변동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전손익 변동↑ ⇒ 총매출 등</li> </ul>	<p>&lt;순액 기준 금액&gt;                      &lt;총액 기준 금액&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전손익: 5~10%</li> <li>▪ 순자산 등: 0.5~3%</li> </ul> <p>① 낮은 수준의 백분율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제표 이용자가 다수, 상장 예정</li> <li>▪ 외부차입금 비율 ↑</li> <li>▪ 회사 사업이 복잡·다양 등</li> </ul> <p>② 높은 수준의 백분율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제표 이용자가 소수·제한적</li> <li>▪ 외부차입금 비율 ↓</li> <li>▪ 회사 사업이 안정적·단순 등</li> </ul>

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Audit Guide」(2700) 재구성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민간부문에 대한 회계감리 시 표준 중요성 개념을 도입하여 회계감사인이 산정한 중요성 금액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했거나 중요성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표준 중요성 산정방식을 적용한 중요성 금액(이하 “표준 중요성 금액”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회계감사인에 대한 제재 양정 등을 결정하고 있다.

**표준 중요성 금액 산정방식(금융감독원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 표준 중요성 금액 = 규모금액의 1% (위법행위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규모금액 = 규모조정계수 적용 전 규모금액 ÷ 규모조정계수
- 규모조정계수 적용 전 규모금액 = (기말자산총계 + 매출액) ÷ 2
- 규모조정계수<sup>21)</sup> = 규모금액별 최저 0.4 ~ 최고 10.0

한편, 「회계감사기준서」 320 문단 A3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재무제표는 다양한 공공목적에 이용되므로 중요성 금액 설정 시 관련 법규와 공공의 정보요구 등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재무제표는 정보 이용자, 이해관계인이 많고 다양한 법령상 의무와 규제가 수반되는 등의 특성이 있으므로 감사여건이 동일한 경우 중요성 금액을 낮게 설정하여 민간부문보다 엄격하게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22)</sup>

이에 24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인이 설정한 중요성 금액과 금융감독원의 표준 중요성 금액을 비교한 결과, [표 36]과 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7개 기관의 회계감사인은 중요성 금액을 표준 중요성 금액보다 높게 설정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계감사인은 금융감독원의 표준 중요성 금액 1,566억 원 대비 754.7% 수준인 1조 1,818억 원을 중요성 금액으로 설정하였다.

**[표 36] 표준 중요성 금액보다 높게 중요성 금액을 설정한 기관(2023회계연도)**

(단위: 억 원, %)

구분	기관명	감사인 중요성 금액(A) <sup>1)</sup>	표준 중요성 금액(B) <sup>2)</sup>	차이(A-B)	비율(A/B×100)
1	한국토지주택공사	11,818	1,566	10,252	754.7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62	77	185	341.8
3	한국광해광업공단	365	115	250	316.3
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57	50	107	313.9
5	한국전력공사	4,291	1,524	2,476	281.5
6	한국석유공사	480	213	267	225.8

21) 규모금액의 차이에 따라 표준중요성 금액이 과도하게 크거나 작게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모계수 조정전 규모금액 구간을 15개로 나누어 0.4에서 10.0까지의 규모조정계수 적용함. 규모조정계수 적용 전 규모금액이 700억 원 미만인 경우 1보다 낮은 규모조정계수를 적용하여 규모금액을 크게 조정함으로써 표준중요성 금액을 높게 조정하고, 규모조정계수 적용 전 규모금액이 1,0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보다 큰 규모조정계수를 적용하여 규모금액을 작게 조정함으로써 표준중요성 금액을 낮게 조정함

22) 「공공감사기준 주석서」 제16조(감사위험과 중요성) 8)

구분	기관명	감사인 중요성 금액(A) <sup>1)</sup>	표준 중요성 금액(B) <sup>2)</sup>	차이(A-B)	비율(A/B×100)
7	한국국토정보공사	55	35	20	158.0
8	한국수자원공사	452	352	100	128.3
9	한국환경산업기술원	74	58	16	127.0
10	한국수력원자력	1,046	850	195	122.9
11	한국도로공사	1,162	945	217	122.9
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93	77	16	120.9
13	근로복지공단	54	44	9	120.5
14	한국동서발전(주)	302	251	51	120.2
15	해양환경공단	34	30	4	114.6
16	한국마사회	73	63	9	114.4
17	한국남부발전(주)	312	286	26	109.2

주: 1. 감사조서상 중요성 금액이 감사의 계획, 수행, 종료 단계로 구분된 경우 종료단계(감사의견 형성 단계)의 중요성 금액  
 2. 금융감독원의 표준 중요성 금액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감사원이 재계산

자료: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감사인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반면 [표 37]과 같이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7개 기관은 표준 중요성 금액과 비교하여 같거나 낮은 중요성 금액을 설정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회계감사를 수행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 중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회계감사인은 금융감독원의 표준 중요성 금액 44억 원 대비 47.7% 수준인 21억 원을 중요성 금액으로 설정하였다.

[표 37] 표준 중요성 금액과 비교해 같거나 낮게 중요성 금액을 설정한 기관(2023회계연도)

(단위: 억 원, %)

구분	기관명	감사인 중요성 금액(A) <sup>1)</sup>	표준 중요성 금액(B) <sup>2)</sup>	차이(A-B)	비율(A/B×100)
1	한국산업단지공단	55	55	-	100
2	한국부동산원	32	33	△1	97.0
3	한국가스공사	847	974	△127	87.0
4	인천국제공항공사	213	252	△39	84.5
5	한국공항공사	85	113	△28	75.2
6	한국자산관리공사	143	192	△49	74.5
7	한국전기안전공사	21	44	△23	47.7

주: 1. 감사조서상 중요성 금액이 감사의 계획, 수행, 종료 단계로 구분된 경우 종료단계(감사의견 형성 단계)의 중요성 금액  
 2. 금융감독원의 표준 중요성 금액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감사원이 재계산

자료: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감사인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나. 중요성 금액 산정 오류 및 회계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중요성 기준 설정

「회계감사기준서」 320 문단 14 및 「Audit Guide」 2700에 따르면 회계감사인은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어떤 재무정보에 기초하여 의사결정 하는지를 고려하여 전문가적 판단하에 중요성을 결정하고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과 그 금액을

결정할 때 고려한 요소들을 감사문서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회계감사에 적용한 중요성 금액이 표준 중요성 금액을 상회하는 상위 3개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회계감사인이 작성한 감사조서를 확인하여 중요성 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점검하였다.

**(1) 중요성 금액 설정 한도를 잘못 계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계감사인(가자회계법인)은 2023회계연도 회계감사 시 자체적으로 [표 38]과 같이 중요성 설정 한도를 계산<sup>23)</sup>하면서 총자산 및 매출액의 금액 단위를 잘못 설정(총자산 222,764십억 원을 222,764천 원으로, 매출액 13,606십억 원을 13,606천 원으로 잘못 표기)하여 낮은 규모의 조정계수를 적용(분모에 3을 적용해야 하는데 0.4로 잘못 적용)함으로 인해 중요성 설정 한도를 높게 계산하였다.

**[표 38]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중요성 금액 설정 내역(2023회계연도)**

구분	수정 전(감사인 작성 감사조서)	수정 후(감사원 재계산)																													
회계감사인 중요성 금액 산정	[중요성 금액 산식] 중요성 금액 = (총자산+매출액) ÷ 2 × 적용 백분율(회계감사인이 결정)																														
	3. 양적 기준을 선택하고 경험에 따른 적용 백분율에 따른 중요성 금액을 계산하라.																														
	<table border="1"> <thead> <tr> <th>Benchmark</th> <th>금액(연단위)</th> </tr> </thead> <tbody> <tr> <td>총자산</td> <td>222,763,726 백만 원</td> </tr> <tr> <td>매출액</td> <td>13,805,532 백만 원</td> </tr> <tr> <td>(총자산+매출액)/2</td> <td>118,184,629 백만 원</td> </tr> <tr> <td>적용 백분율</td> <td>1.0% (%)</td> </tr> <tr> <td>중요성 금액</td> <td>1,181,848 백만 원</td> </tr> </tbody> </table>	Benchmark	금액(연단위)	총자산	222,763,726 백만 원	매출액	13,805,532 백만 원	(총자산+매출액)/2	118,184,629 백만 원	적용 백분율	1.0% (%)	중요성 금액	1,181,848 백만 원	<table border="1"> <thead> <tr> <th>Benchmark</th> <th>금액(연단위)</th> </tr> </thead> <tbody> <tr> <td>총자산</td> <td>222,763,726 백만 원</td> </tr> <tr> <td>매출액</td> <td>13,805,532 백만 원</td> </tr> <tr> <td>(총자산+매출액)/2</td> <td>118,184,629 백만 원</td> </tr> <tr> <td>적용 백분율</td> <td>1.0% (%)</td> </tr> <tr> <td>중요성 금액</td> <td>한도 초과 백만 원</td> </tr> </tbody> </table>	Benchmark	금액(연단위)	총자산	222,763,726 백만 원	매출액	13,805,532 백만 원	(총자산+매출액)/2	118,184,629 백만 원	적용 백분율	1.0% (%)	중요성 금액	한도 초과 백만 원					
	Benchmark	금액(연단위)																													
총자산	222,763,726 백만 원																														
매출액	13,805,532 백만 원																														
(총자산+매출액)/2	118,184,629 백만 원																														
적용 백분율	1.0% (%)																														
중요성 금액	1,181,848 백만 원																														
Benchmark	금액(연단위)																														
총자산	222,763,726 백만 원																														
매출액	13,805,532 백만 원																														
(총자산+매출액)/2	118,184,629 백만 원																														
적용 백분율	1.0% (%)																														
중요성 금액	한도 초과 백만 원																														
4. 한도를 비교하여 양적 중요성 기준금액을 결정하라. (상단의 Rule of thumb 수정)																															
<table border="1"> <tbody> <tr> <td>산정 중요성금액</td> <td>1,181,848 백만 원</td> </tr> <tr> <td>한도</td> <td>4,431,924 백만 원</td> </tr> </tbody> </table>	산정 중요성금액	1,181,848 백만 원	한도	4,431,924 백만 원	<table border="1"> <tbody> <tr> <td>산정 중요성금액</td> <td>1,181,848 백만 원</td> </tr> <tr> <td>한도</td> <td>590,923 백만 원</td> </tr> </tbody> </table>	산정 중요성금액	1,181,848 백만 원	한도	590,923 백만 원																						
산정 중요성금액	1,181,848 백만 원																														
한도	4,431,924 백만 원																														
산정 중요성금액	1,181,848 백만 원																														
한도	590,923 백만 원																														
자체한도 계산	[자체한도 산식] 규모금액 = (총자산+매출액) ÷ 2 중요성금액 = 규모금액 × 중요성비율(회계감사인이 결정) ÷ 규모조정계수(규모에 따라 결정) 자체한도 = 중요성금액 × 150%																														
	이하 한도 계산.																														
	<table border="1"> <thead> <tr> <th>Benchmark</th> <th>금액(연단위)</th> <th>규모조정계수</th> </tr> </thead> <tbody> <tr> <td>총자산</td> <td>222,764 천 원</td> <td>0.400</td> </tr> <tr> <td>매출액</td> <td>13,806 천 원</td> <td>0.400</td> </tr> <tr> <td>(총자산+매출액)/2</td> <td>118,185 천 원</td> <td>0.400</td> </tr> </tbody> </table>	Benchmark	금액(연단위)	규모조정계수	총자산	222,764 천 원	0.400	매출액	13,806 천 원	0.400	(총자산+매출액)/2	118,185 천 원	0.400	<table border="1"> <thead> <tr> <th>Benchmark</th> <th>금액(연단위)</th> <th>규모조정계수</th> </tr> </thead> <tbody> <tr> <td>총자산</td> <td>222,764 십억 원</td> <td>3.000</td> </tr> <tr> <td>매출액</td> <td>13,806 십억 원</td> <td>3.000</td> </tr> <tr> <td>(총자산+매출액)/2</td> <td>118,185 십억 원</td> <td>3.000</td> </tr> </tbody> </table>	Benchmark	금액(연단위)	규모조정계수	총자산	222,764 십억 원	3.000	매출액	13,806 십억 원	3.000	(총자산+매출액)/2	118,185 십억 원	3.000					
	Benchmark	금액(연단위)	규모조정계수																												
총자산	222,764 천 원	0.400																													
매출액	13,806 천 원	0.400																													
(총자산+매출액)/2	118,185 천 원	0.400																													
Benchmark	금액(연단위)	규모조정계수																													
총자산	222,764 십억 원	3.000																													
매출액	13,806 십억 원	3.000																													
(총자산+매출액)/2	118,185 십억 원	3.000																													
(금액단위 : 천 원)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규모금액</th> <th>계수</th> <th>중요성비율</th> <th>중요성금액</th> </tr> </thead> <tbody> <tr> <td>당기손익 및 자기자본에 영향</td> <td>118,185</td> <td>0.40</td> <td>1%</td> <td>2,955</td> </tr> <tr> <td>한도</td> <td></td> <td></td> <td></td> <td>4,432</td> </tr> </tbody> </table>	항목	규모금액	계수	중요성비율	중요성금액	당기손익 및 자기자본에 영향	118,185	0.40	1%	2,955	한도				4,432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규모금액</th> <th>계수</th> <th>중요성비율</th> <th>중요성금액</th> </tr> </thead> <tbody> <tr> <td>당기손익 및 자기자본에 영향</td> <td>118,185</td> <td>3.00</td> <td>1%</td> <td>394</td> </tr> <tr> <td>한도</td> <td></td> <td></td> <td></td> <td>591</td> </tr> </tbody> </table>	항목	규모금액	계수	중요성비율	중요성금액	당기손익 및 자기자본에 영향	118,185	3.00	1%	394	한도				591
항목	규모금액	계수	중요성비율	중요성금액																											
당기손익 및 자기자본에 영향	118,185	0.40	1%	2,955																											
한도				4,432																											
항목	규모금액	계수	중요성비율	중요성금액																											
당기손익 및 자기자본에 영향	118,185	3.00	1%	394																											
한도				591																											

자료: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감사인 제출자료 재구성

23) 회계감사인은 금융감독원의 표준 중요성 금액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인 설정 한도를 정함으로써 총매출 등을 고려한 중요성 금액 설정 시 중요성 금액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다만, 회계감사인별로 다르게 운영)

회계감사인이 정한 중요성 설정 한도를 제대로 수정할 경우 재계산된 중요성 설정 한도는 5,909억 원으로 회계감사인이 산정한 금액(1조 1,818억 원)은 한도를 초과하게 되나, 회계감사인은 이러한 오류를 확인·수정하지 못한 채 중요성 금액을 자체적으로 산정한 한도의 2배 수준인 1조 1,818억 원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회계감사인(회계법인)은 2023회계연도 회계 감사를 하면서 [표 39]와 같이 중요성 금액의 적정성 판단 시 금융감독원 표준 중요성 금액의 130%인 308억 원(자체계산 표준 중요성 금액 237억 원의 130%)을 자체 한도(감사조서에 “최대” 라고 표현)로 설정하고도 이를 초과하는 365억 원을 중요성 금액으로 설정하였다.

[표 39]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대한 중요성 금액 설정 내역(2023회계연도)

구분	수정 전 (감사인 작성 감사조서)	수정 후 (감사원 재계산)																
비교 대상 표준 중요성 금액 산정	<p>[금융감독원 표준 중요성 금액 산식] 표준 중요성 금액 = (총자산+매출액) ÷ 2 × 중요성비율(1%) ÷ 규모조정계수(회사규모 등에 의해 결정)</p> <p>자산총액 5,139,318 (백만원) 매출액 1,072,856 (백만원)</p> <p>규모금액 3,106,087 X 1% ÷ 규모조정계수(주) = 23,700</p> <p>A유형 전채(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 23,700</p> <p>규모금액 31,061 기타(*) 1.31 규모조정계수</p> <p>상장,코스닥,상장예정,금융기관 2.62</p>	<p>자산총액 5,139,318 (백만원) 매출액 1,072,856 (백만원)</p> <p>규모금액 3,106,087 X 1% ÷ 규모조정계수(주) = 11,850</p> <p>A유형 전채(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 11,850</p> <p>규모금액 31,061 기타(*) 1.31 규모조정계수</p> <p>상장,코스닥,상장예정,금융기관 2.62</p>																
	<p>[표준 중요성과의 비교] (단위: 백만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KPMG 방법론</th> <th>표준 × 130% (최대)</th> <th>차이</th> </tr> </thead> <tbody> <tr> <td>별도재무제표</td> <td>36,500</td> <td>30,809</td> <td>▲ 5,691</td> </tr> </tbody> </table>	구분	KPMG 방법론	표준 × 130% (최대)	차이	별도재무제표	36,500	30,809	▲ 5,691	<p>[표준 중요성과의 비교] (단위: 백만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KPMG 방법론</th> <th>표준 × 130% (최대)</th> <th>차이</th> </tr> </thead> <tbody> <tr> <td>별도재무제표</td> <td>36,500</td> <td>15,405</td> <td>▲ 21,095</td> </tr> </tbody> </table>	구분	KPMG 방법론	표준 × 130% (최대)	차이	별도재무제표	36,500	15,405	▲ 21,095
구분	KPMG 방법론	표준 × 130% (최대)	차이															
별도재무제표	36,500	30,809	▲ 5,691															
구분	KPMG 방법론	표준 × 130% (최대)	차이															
별도재무제표	36,500	15,405	▲ 21,095															
자체 한도 비교	<p>[표준 중요성과의 비교] (단위: 백만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KPMG 방법론</th> <th>표준 × 130% (최대)</th> <th>차이</th> </tr> </thead> <tbody> <tr> <td>별도재무제표</td> <td>36,500</td> <td>30,809</td> <td>▲ 5,691</td> </tr> </tbody> </table>	구분	KPMG 방법론	표준 × 130% (최대)	차이	별도재무제표	36,500	30,809	▲ 5,691	<p>[표준 중요성과의 비교] (단위: 백만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KPMG 방법론</th> <th>표준 × 130% (최대)</th> <th>차이</th> </tr> </thead> <tbody> <tr> <td>별도재무제표</td> <td>36,500</td> <td>15,405</td> <td>▲ 21,095</td> </tr> </tbody> </table>	구분	KPMG 방법론	표준 × 130% (최대)	차이	별도재무제표	36,500	15,405	▲ 21,095
구분	KPMG 방법론	표준 × 130% (최대)	차이															
별도재무제표	36,500	30,809	▲ 5,691															
구분	KPMG 방법론	표준 × 130% (최대)	차이															
별도재무제표	36,500	15,405	▲ 21,095															

자료: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감사인 제출자료 재구성

더욱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회계감사인은 자체 한도 설정을 목적으로 금융 감독원 표준 중요성 금액을 계산하면서 [표 39]와 같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4조 7,788억 원)이 1,000억 원 이상이고 차입금 의존도 (약 120%)가 50% 이상이어서 일반(감사조서에 “상장, 코스닥, 상장예정, 금융기관” 으

로 표현) 규모조정계수(2.62)를 적용해야 하는데도 소규모 비상장기업에 적용되는 규모조정계수(1.31)를 잘못 적용하였고, 이를 제대로 수정할 경우 재계산된 표준 중요성 금액은 119억 원, 중요성 금액 자체한도는 154억 원(119억 원의 130%)으로 계산되어 회계감사인이 설정한 중요성 금액 365억 원은 수정된 자체한도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2) 회계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중요성 기준 설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회계감사인(☐☐회계법인)은 중요성 금액 산정 시 기준금액을 선택하면서 [표 40]과 같이 매출액(1조 3,094억 원, 수탁사업수익 1조 2,484억 원 포함)과 총자산(1,826억 원) 중 큰 금액인 매출액(총자산의 684% 수준)을 기준금액으로 선택하였고, 「Audit Guide」(2700)에 제시된 적용 가능한 백분율 범위(0.08~2%)에서도 가장 높은 2%를 선택함으로써 가장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앞서 살펴본 ☐☐회계법인과 ☐☐회계법인 등 다른 회계감사인과 달리 자체한도를 두고 있지 않아 표준 중요성 금액 77억 원의 341.8% 수준인 262억 원으로 중요성 금액을 설정하였다.

[표 4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한 중요성 금액 설정 내역(2023회계연도)

(단위: 억 원, %)

기관명	기준금액			적용 백분율	감사인 중요성 금액(A)	표준 중요성 금액(B)	비율 (A/B×100)
	매출액	총자산	선택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094	1,826	매출액 (13,094)	2.0	262	77	341.8

자료: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감사인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민간부문과 달리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44조 제5호에 따라 정부로부터 수취한 보조금 등에 대해 비용과 상계하지 않고 전액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되어있어 매출액이 총액으로 인식되는 회계특

성이 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3회계연도 매출액 1조 3,094억 원에는 정부로부터 받아서 소상공인 등에 지원한 수탁사업수익 1조 2,484억 원이 포함되어 있어 민간부문<sup>24)</sup>에 비해 매출액이 크게 인식되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회계감사인은 이러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탁사업수익이 포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요성 금액을 설정하여 높은 수준의 중요성 금액이 산출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 다. 소결

회계감사에서 중요성 금액은 감사위험 평가와 감사절차 설계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며 적정하게 설정된 중요성 금액과 이를 명확히 기록한 조서는 회계정보 이용자의 신뢰와 합리적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일부 회계감사인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사업 및 회계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중요성 금액을 높게 설정하고 있었고, 중요성 금액 설정 과정에서 산정 오류가 발생한 사례도 있는 등 회계법인이 중요성 금액 설정과 관련한 내부 품질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회계감사인에게 공공기관의 회계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중요성 금액을 설정하고 중요성 금액 산정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품질관리 강화를 안내·요구하는 등 업무수행에 유의할 필요가 있었다.

---

24)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다면 별도의 수수료가 없는 정부수탁사업의 매출액은 원칙적으로 0원으로 인식

## 제4장 종합결론 및 통보<sup>25)</sup>

---

### 1 | 종합결론

회계감사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감사인을 공정하게 선정하고, 선정된 감사인이 충분한 노력(감사시간)을 투입하여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입증절차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감사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게 감사인을 선정하고 있는지, 선정된 감사인이 충분한 감사시간을 투입하여 충실하게 회계감사를 수행하는지, 공공기관의 결산 및 회계감사 관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사 중점으로 설정하였고, 위 사항들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될 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지적보다는 종합적으로 실태를 분석·점검하였다.

#### 1. 회계감사인 선정 관련

회계감사 능력을 갖춘 회계감사인을 공정하게 선정하는 것은 회계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감사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이는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선임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전문성을 갖춘 회계감사인을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회계감사인 선정절차와 평가기준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 선임위원회를 법령과 다르게 구성하는 사례가 있었고, 각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내부 선임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제도 도입

---

25) 이번 장에서는 이번 감사결과보고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별 실태분석의 내용과 관계기관 의견 및 감사원의 통보를 종합하여 실시함

후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다수 기관이 선임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거나 제한적인 기능만 부여하고 있어 회계감사인 선정 시 제안서 평가 또는 선임안 사후승인의 역할에 그치고 있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선정기준 마련, 제안서 평가에 사업부서가 참여하는 등 당초 선임위원회를 도입한 취지에는 미치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그리고 회계감사인 선정기준과 평가지표는 전문성과 독립성 등을 확보한 회계감사인을 선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이나 대부분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각각의 방식으로 평가기준을 정하면서 감사품질과 관련성이 낮은 항목을 포함하여 높은 배점을 부여하거나 감사품질에 중요한 항목을 낮게 배점하는 등으로 회계감사수행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전문성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회계자문 등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포함한 기관도 다수 확인되었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국가계약 관련 법령과 결산감사규칙을 위반하여 입찰을 공고하고, 기한 내에 회계감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감사원에 선정결과를 제대로 통보하지 않는 등의 사례도 일부 확인되었다.

따라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앞으로 ① 선임위원회 운영규정에 위원회가 회계감사인 선정과정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선정기준 마련과 제안서 평가 등에 내부위원이 참여하는 등 선임위원회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회계감사인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며, 공공기관운영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② 회계감사 수행인력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 회계감사인 선정기준과 평가지표를 마련하며, ③ 회계감사인 선정 시 국가계약 관련 법령과 결산감사규칙을 준수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 2. 회계감사 관리 및 수행 관련

회계감사의 품질은 회계오류와 부정의 발견 가능성과 이에 대한 보고 가능성에 따라 결정되는데, 회계오류와 부정을 발견할 가능성은 회계감사인이 투입하는 노력, 특히 감사시간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며,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이 강화될수록 회계오류와 부정을 보고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준정부기관의 경우 감사시간이 민간부문에 적용되는 표준감사시간에 비해 많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고, 상장 공기업 등 일부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적정 감사시간을 설계하고 회계감사인과 이를 협의하여 계약 내용에 반영하고 사후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아 충실한 회계감사를 위한 회계감사인의 노력을 담보할 수 없어 낮은 회계신뢰성의 한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다.

그리고 일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여 회계감사인 소속 동일이사가 6개 회계연도 연속으로 회계감사를 담당하는데도 교체되도록 조치하지 않고, 회계감사용역 과업에 연중 또는 상시 회계자문을 포함하는 등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일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자체결산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회계감사인에게 감사 前 재무제표의 제출도 지연되거나, 회계감사인과의 감사 일정 협의 과정에서 기관에 대한 감사 일정이 지연되고 감사보고서 작성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으로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등 촉박한 회계감사 일정으로 입증감사 절차가 충실하게 수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고,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어 기획재정부 및 주무기관의 결산서 검토가 소홀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었다.

한편 일부 회계감사인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사업 및 회계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중요성 금액을 높게 설정하고 있었고, 중요성 금액 설정 과정에서 산정 오류가 발생한 사례도 있는 등 회계법인이 중요성 금액 설정과 관련한 내부 품질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앞으로 ① 민간부문의 표준감사시간과 유사 기업의 감사시간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적정 감사시간을 정하고 회계감사인 선임 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예정 감사시간을 확정하며 실제 감사시간을 사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② 회계감사인 선임 및 감사계약 체결 시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과업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공공기관 운영법과 결산감사규칙을 준수하며, ③ 회계감사인이 충분한 입증감사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와 주무기관 등의 심의·검토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결산능력 향상과 회계연도 중 지속적인 회계처리 점검 등을 통해 신속하게 결산을 마무리하고 회계감사인과의 감사일정 협의를 통해 감사보고서 발행일을 앞당기며, ④ 회계감사인에게 공공기관의 회계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중요성 금액을 설정하고 중요성 금액 산정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품질관리 강화를 안내·요구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 2 | 관계기관 의견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전문성·독립성을 갖춘 회계감사인을 공정하게 선정·선임하고 회계감사가 충실하게 수행되어 회계감사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3 | 감사원의 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인 선정, 회계감사 관리 등과 관련한 실태 및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위 감사결과를 통보하니 공공기관의 회계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통보)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sup>26)</sup>의 장은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 회계감사인 선정절차, 감사시간·독립성 등 회계감사 관리, 결산절차, 회계감사인의 중요성 기준 설정 등과 관련하여 업무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 감사결과를 통보 하니 관련 업무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6)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주)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조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마사회,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한국수자원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해양환경공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장학재단,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관광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소비자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별표 목차

[별표 1] 선임위원회 운영규정의 위원회 권한·기능 분석 .....	68
[별표 2] 선임위원회 개최 및 심의안건 현황 .....	71
[별표 3] 감사품질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낮은 평가지표 운영 현황 .....	73
[별표 4] 제안서 평가기준에 수행실적을 포함한 기관 명세 .....	76
[별표 5] 기관별 계약감사시간과 표준감사시간 비교(50개 기관) .....	78
[별표 6] 기관별 실제감사시간과 계약감사시간 비교(17개 기관) .....	80

[별표 1]

선임위원회 운영규정의 위원회 권한·기능 분석

연번	기관명	선정/선임	선정기준		감사보수·시간·인력		제안서 평가	변경/해임	비고
			규정화	위원회 심의	문서화	사후 평가			
1	(주)강원랜드	○						○	감사위원회규정
2	인천국제공항공사	○		○			○	○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외부회계감사인 선임에 관한 지침
3	한국가스공사	○						○	감사위원회운영규정
4	한국공항공사	○		○				○	외부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기준
5	한국남동발전(주)	○						○	감사위원회운영규정
6	한국남부발전(주)	○					○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7	한국도로공사	○		○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기준
8	한국동서발전(주)	○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9	한국서부발전(주)	○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10	한국석유공사	○		○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규정
11	한국수력원자력(주)	○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12	한국전력공사	○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13	한국중부발전(주)	○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14	한국지역난방공사	○	○	○	○	○	○	○	감사 운영규정
15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감사 직무규정
16	대한석탄공사	○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지침
17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		○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18	주식회사 에스알	○	○	○				○	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지침
19	주택도시보증공사	○	○					○	외부감사인 선정기준
20	(주)한국가스기술공사	○	○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지침
21	한국광해광업공단	○		○					외부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지침
22	한국마사회	○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23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회계규정
24	한국부동산원	○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25	한국수자원공사	○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26	한국전력기술(주)	○	○	○	○	○	○	○	회계감사인 선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지침
27	한국조폐공사	○		○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지침
28	한국철도공사	○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29	한국토지주택공사	○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30	한전KDN(주)	○		○				○	회계법인 선임지침

연번	기관명	선정/선임	선정기준		감사보수·시간·인력		제안서 평가	변경/해임	비고
			규정화	위원회 심의	문서화	사후 평가			
31	한전KPS(주)	○		○	○	○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기준
32	해양환경공단	○		○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지침
33	공무원연금공단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34	국민연금공단	○	○				○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35	근로복지공단	○	○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지침
36	기술보증기금	○	○				○		회계감사인 선정기준
37	국민체육진흥공단	○		○			○	○	감사 직무규정
3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요령
39	신용보증기금	○	○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기준
40	예금보험공사	○	○				○	○	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세칙
4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지침
42	한국무역보험공사	○	○				○		외부회계감사인 선정요령
43	한국자산관리공사	○	○				○		회계감사인선임 및 운영 요강
44	한국주택금융공사		○				○		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기준
4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			○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규정
46	국가철도공단	○		○			○	○	회계규정
47	국립공원공단	○	○				○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규정
48	국립생태원	○	○				○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49	국민건강보험공단	○					○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지침
50	국토안전관리원	○					○		예산회계규정
51	한국국토정보공사	○		○				○	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지침
5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인권·윤리경영 실천규정
53	도로교통공단	○	○				○		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예규
54	(재)우체국금융개발원	○					○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지침
55	(재)우체국물류지원단	○	○				○	○	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세칙
56	축산물품질평가원	○	○						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지침
57	한국가스안전공사	○	○				○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칙
58	한국고용정보원	○	○				○		회계감사인선임 및 운영지침
59	한국관광공사	○		○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규정
60	한국교통안전공단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방침
61	한국국제협력단	○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규정
6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규정 없음
63	한국농어촌공사			○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지침

연번	기관명	선정/선임	선정기준		감사보수·시간·인력		제안서 평가	변경/해임	비고
			규정화	위원회 심의	문서화	사후 평가			
6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지침
6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				○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규정
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규정
67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				○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규정
68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				○	○	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규칙
6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	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규칙
70	한국산업단지공단	○		○			○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규정
7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회계사무규칙
72	한국산업인력공단	○					○	○	회계감사인선정 운영지침
73	한국석유관리원	○						○	회계규정 시행세칙
74	한국소비자원	○		○			○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지침
75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규칙
76	한국에너지공단	○		○				○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77	한국연구재단	○	○				○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규정
78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	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지침
79	한국인터넷진흥원	○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지침
8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규칙
81	한국장학재단	○	○	○			○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지침
82	한국전기안전공사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지침
83	한국전력거래소	○					○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규정
8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지침
8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				○	○	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기준
86	한국환경공단	○	○				○	○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8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	○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칙

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는 「감사 직무규정」에 감사가 감사선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외부감사인을 선정 및 해임 요청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선임위원회 관련 규정은 없음  
 자료: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제출한 선임위원회 운영규정을 토대로 재작성

[별표 2]

선임위원회 개최 및 심의안건 현황

연번	기관명	기관 유형	선정 회계연도	선정계획 (선정기준 등)	선임안	제안서 평가
1	(주)강원랜드	시장형공기업	2023~2025회계연도	○		○
2	인천국제공항공사	시장형공기업	2024~2026회계연도	○	○	○
3	한국가스공사	시장형공기업	2024~2026회계연도	○	○	○
4	한국공항공사	시장형공기업	2023~2025회계연도	○	○	
5	한국남동발전(주)	시장형공기업	2022~2024회계연도		○	
6	한국남부발전(주)	시장형공기업	2025~2027회계연도		○	
7	한국도로공사	시장형공기업	2024~2026회계연도	○	○	
8	한국동서발전(주)	시장형공기업	2022~2024회계연도		○	
9	한국서부발전(주)	시장형공기업	2022~2024회계연도	○	○	
10	한국석유공사	시장형공기업	2022~2024회계연도	○	○	
11	한국수력원자력(주)	시장형공기업	2022~2024회계연도		○	○
12	한국전력공사	시장형공기업	2022~2024회계연도		○	○
13	한국중부발전(주)	시장형공기업	2025~2027회계연도		○	
14	한국지역난방공사	시장형공기업	2024~2026회계연도	○	○	
15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준시장형공기업	2022~2024회계연도		○	
16	대한석탄공사	준시장형공기업	2024~2026회계연도	○		○
1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준시장형공기업	2023~2025회계연도	○		○
18	주식회사 에스알	준시장형공기업	2023~2025회계연도			○
19	주택도시보증공사	준시장형공기업	2023~2025회계연도			○
20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준시장형공기업	2022~2024회계연도	○	○	○
21	한국광해광업공단	준시장형공기업	2024~2026회계연도	○	○	
22	한국마사회	준시장형공기업	2023~2025회계연도			○
23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준시장형공기업	2023~2025회계연도	○		○
24	한국부동산원	준시장형공기업	2023~2025회계연도		○	
25	한국수자원공사	준시장형공기업	2024~2026회계연도		○	
26	한국전력기술(주)	준시장형공기업	2024~2026회계연도	○	○	
27	한국조폐공사	준시장형공기업	2023~2025회계연도	○	○	
28	한국철도공사	준시장형공기업	2023~2025회계연도	○		
29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시장형공기업	2024~2026회계연도	○	○	
30	한전KDN(주)	준시장형공기업	2022~2024회계연도		○	○
31	한전KPS(주)	준시장형공기업	2023~2025회계연도	○	○	
32	해양환경공단	준시장형공기업	2024~2026회계연도	○	○	○
33	공무원연금공단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	2023~2025회계연도			○
34	국민연금공단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	2023~2025회계연도			○
35	근로복지공단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	2023~2025회계연도			○
36	기술보증기금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	2023~2025회계연도			○
37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	2023~2025회계연도	○		○
3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	2024~2026회계연도	○	○	○
39	신용보증기금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	2023~2025회계연도			○
40	예금보험공사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	2023~2025회계연도			○
4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	2024~2026회계연도			○
42	한국무역보험공사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	2023~2025회계연도			○
43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	2023~2025회계연도			○
44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	2022~2024회계연도			○

연번	기관명	기관 유형	선정 회계연도	선정계획 (선정기준 등)	선임안	제안서 평가
4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2023~2025회계연도			○
46	국가철도공단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2024~2026회계연도	○		
47	국립공원공단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2022~2024회계연도			○
48	국립생태원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2023~2025회계연도			○
49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2023~2025회계연도			○
50	국토안전관리원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2022~2024회계연도			○
51	한국국토정보공사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2023~2025회계연도	○		○
5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2024~2026회계연도			○
53	도로교통공단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2023~2025회계연도			○
54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2023~2025회계연도	○		○
55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2022~2024회계연도			○
56	축산물품질평가원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2022~2024회계연도		○	
57	한국가스안전공사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2023~2025회계연도			○
58	한국고용정보원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2024~2026회계연도			○
59	한국관광공사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2023~2025회계연도			○
60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2022~2024회계연도	○		○
61	한국국제협력단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2022~2024회계연도			○
62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2023~2025회계연도	○		○
63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2024~2026회계연도	○		
6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2022~2024회계연도			○
6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2023~2025회계연도			○
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2023~2025회계연도			○
67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2024~2026회계연도			○
68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2023~2025회계연도			○
6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2022~2024회계연도			○
70	한국산업단지공단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2022~2024회계연도	○		○
7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2023~2025회계연도			○
72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2023~2025회계연도			○
73	한국석유관리원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2022~2024회계연도			○
74	한국소비자원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2022~2024회계연도	○		○
75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2022~2024회계연도	○		○
76	한국에너지공단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2022~2024회계연도	○		○
77	한국연구재단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2024~2026회계연도		○	○
78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2024~2026회계연도		○	
79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2023~2025회계연도		○	
8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2022~2024회계연도			○
81	한국장학재단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2022~2024회계연도			○
82	한국전기안전공사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2023~2025회계연도			○
83	한국전력거래소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2022~2024회계연도			○
8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2022~2024회계연도	○	○	○
8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2022~2024회계연도			○
86	한국환경공단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2022~2024회계연도		○	○
8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2022~2024회계연도			○

자료: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제출한 선임위원회 회의안건, 회의록을 토대로 재작성

[별표 3]

감사품질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낮은 평가지표 운영 현황

연법	기관명	평가지표 포함 여부			
		회계법인 경영상태 <sup>주)</sup>	매출액	등록 공인 회계사 수	기타 회계감사 무관 지표
	계	53개	37개	32개	
1	한국토지주택공사	0	0		회계·내부감사 관련 서비스 제공 계획
2	한국주택금융공사		0	0	회계 관련 교육계획 및 부가서비스 제공 내용 등
3	한국전력공사	0			감사품질 향상 및 회계·내부감사 관련 서비스 제공 계획
4	한국도로공사	0	0	0	외국 회계법인 업무 제휴
5	한국수력원자력(주)	0			감사품질 향상 및 회계·내부감사 관련 서비스 제공 계획
6	한국가스공사	0			
7	국민건강보험공단	0		0	
8	한국철도공사		0		외국회계법인 업무제휴
9	한국수자원공사		0		회계·내부감사 관련 서비스 제공 계획
10	국가철도공단	0			
11	예금보험공사		0	0	세무조정 용역 및 내부 회계관리제도 운영 관련 자문 서비스 제공방안 등
12	한국농어촌공사	0		0	소속 공인회계사 수 20인 이상
13	한전KPS(주)	0			
14	한국중부발전(주)	0			감사품질 향상 및 회계·내부감사 관련 서비스 제공 계획
15	인천국제공항공사	0	0		
16	한국남부발전(주)	0			
17	한국남동발전(주)	0			회계·내부감사 관련 서비스 제공 계획
18	한국석유공사	0			국제채 발행 관련 Comfort Letter 발행 경험, 부가 회계서비스 제공
19	한국서부발전(주)	0			내부감사 지원 및 서비스 향상계획
20	한국동서발전(주)	0			회계 및 재무 관련 서비스 제공 계획
21	한국자산관리공사		0		외국 회계법인 업무 제휴
22	한국장학재단		0	0	기관경영평가 관련 지원계획
23	한국지역난방공사	0			
24	한국광해광업공단	0	0		해외채권 관련 용역제안가격 평가
25	한국공항공사	0	0		
26	주택도시보증공사	0		0	
27	(주)강원랜드	0			
2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		
29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0		
30	한국원자력환경공단	0		0	외국 회계법인 업무 제휴
3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0		0	회계, 세무 관련 교육 지원 등 기타 부가서비스 제공 계획
3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		0	
33	주식회사 에스알	0			회계환경 변화에 대한 부가 서비스 제공 계획
34	근로복지공단		0		회계·세무 정보 제공, 정부 경영평가 등 추가 지원 서비스 등의 적정성

연번	기관명	평가지표 포함 여부			
		회계법인 경영상태 <sup>주)</sup>	매출액	등록 공인 회계사 수	기타 회계감사 무관 지표
35	대한석탄공사	0			회계에 대한 신속한 지원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정도
36	한국전력기술(주)	0			
37	한국국토정보공사	0	0	0	부가협력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구체성
38	한전KDN(주)	0			
3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			
40	그랜드코리아레저(주)	0			
41	한국관광공사	0	0	0	
42	한국조폐공사		0	0	
43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0	
44	국민연금공단	0	0	0	외국회계법인 업무제휴
45	한국에너지공단	0		0	
46	한국전기안전공사	0			
47	한국전력거래소			0	
48	한국도로교통공단	0	0	0	
49	한국산업인력공단	0			
5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0		
51	한국가스안전공사	0			
52	(주)한국가스기술공사	0			해외사업 등 신규분야 회계 프로세스, 내부통제 등에 대한 자문서비스 및 회계·세무 관련 지도, 교육 등 부가 서비스 제공 방안
5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	0	외국 회계법인 업무 제휴
5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0			
55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0			컨설팅 서비스(회계/세무/자금 운용 등) 내용
56	한국국제협력단	0			
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			경영평가 관련 지원내용 등의 적정성
58	한국환경공단		0	0	
5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0		
60	(재)우체국물류지원단		0	0	
61	한국인터넷진흥원	0			
62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	0	전문지식 제공, 경영평가 관련 지원계획
63	한국승강기안전공단	0			
64	한국석유관리원	0			
6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0	0	
66	한국산림복지진흥원		0		
6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0		정부 경영평가 등 추가 지원서비스 등의 적정성
68	국토안전관리원		0	0	
69	한국소비자원	0			
70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0			
7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			
72	국립공원공단		0	0	
73	한국교통안전공단			0	정부경영평가 관련 지원 계획의 적정성

연법	기관명	평가지표 포함 여부			
		회계법인 경영상태 <sup>주)</sup>	매출액	등록 공인 회계사 수	기타 회계감사 무관 지표
74	한국고용정보원		0		
75	(재)우체국금융개발원	0			
76	국립생태원		0	0	
77	축산물품질평가원	0			
78	한국연구재단	0			
79	공무원연공공단	0	0	0	
80	기술보증기금		0	0	회계 관련 교육 및 부가서비스 제공
81	신용보증기금		0	0	회계 관련 교육 및 부가서비스 제공 외국 회계법인 업무 제휴
8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	0	경영평가 관련 지원서비스 제공 계획, 외국 회계법인 업무 제휴
83	한국무역보험공사		0	0	

주: 회계법인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재무구조, 재무상태를 평가지표에 포함한 경우임  
 자료: 공기업·준정부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4]

제안서 평가기준에 수행실적을 포함한 기관 명세

(단위: 원)

연번	공공기관명	회계감사 대상연도	계약방법	계약일자	추정가격
1	한국산업단지공단	2019~2021	제한경쟁	2019-06-20	163,636,363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9~2021	제한경쟁	2019-08-09	81,818,181
		2022~2024	제한경쟁	2022-05-13	109,090,909
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1~2023	일반경쟁	2021-06-24	209,090,909
		2024~2026	일반경쟁	2024-06-24	220,000,000
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20~2022	제한경쟁	2020-06-01	129,818,181
		2023~2025	제한경쟁	2023-06-15	150,000,000
5	근로복지공단	2020~2022	일반경쟁	2020-06-30	289,090,909
		2023~2025	일반경쟁	2023-06-20	289,090,909
6	대한석탄공사	2021~2023	제한경쟁	2021-06-03	147,272,727
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2022	제한경쟁	2020-06-29	100,090,909
		2023~2025	제한경쟁	2023-07-10	109,909,090
8	한국조폐공사	2020~2022	제한경쟁	2020-06-02	198,000,000
		2023~2025	제한경쟁	2023-06-27	195,000,000
9	한국에너지공단	2019~2021	제한경쟁	2019-07-18	68,181,818
		2022~2024	제한경쟁	2022-07-01	81,818,182
10	한국전기안전공사	2020~2022	제한경쟁	2020-07-10	148,500,000
		2023~2025	제한경쟁	2023-07-10	120,000,000
11	한국도로교통공단	2020~2022	제한경쟁	2020-04-28	122,727,273
		2023~2025	제한경쟁	2023-04-25	123,681,818
12	한국산업인력공단	2020~2022	제한경쟁	2020-07-17	105,000,000
		2023~2025	제한경쟁	2023-07-17	120,000,000
1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020~2022	제한경쟁	2020-06-18	89,250,000
		2023~2025	제한경쟁	2023-06-20	207,272,727
14	한국가스안전공사	2020~2022	제한경쟁	2020-07-23	88,090,909
		2023~2025	제한경쟁	2023-05-11	130,909,091
15	한국부동산원	2020~2022	제한경쟁	2020-06-23	137,272,727
		2023~2025	제한경쟁	2023-07-03	166,363,636
1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1~2023	제한경쟁	2021-07-01	129,545,454
		2024~2026	제한경쟁	2024-06-27	129,874,864
17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9~2021	제한경쟁	2019-07-23	118,909,090
		2022~2024	제한경쟁	2022-07-05	112,909,091
18	한국국제협력단	2019~2021	제한경쟁	2019-06-26	180,000,000
		2022~2024	제한경쟁	2022-06-30	180,000,000
19	한국환경공단	2022~2024	제한경쟁	2022-06-22	109,090,909

연번	공공기관명	회계감사 대상연도	계약방법	계약일자	추정가격
2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0~2022	제한경쟁	2020-07-16	122,727,272
		2023~2025	수익계약	2023-07-10	136,363,636
21	(재)우체국물류지원단	2019~2021	제한경쟁	2019-07-02	107,016,179
		2022~2024	제한경쟁	2022-06-28	110,491,551
22	한국인터넷진흥원	2021~2023	일반경쟁	2021-05-10	81,818,181
		2024~2026	일반경쟁	2024-05-23	109,090,909
23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0~2022	제한경쟁	2020-07-17	40,909,090
		2023~2025	제한경쟁	2023-08-22	49,090,909
24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019~2021	제한경쟁	2019-07-01	60,498,900
		2022~2024	제한경쟁	2022-07-13	75,000,000
25	한국석유관리원	2019~2021	제한경쟁	2019-07-10	39,000,000
		2022~2024	제한경쟁	2022-07-22	54,900,000
26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019~2021	제한경쟁	2019-06-10	61,363,636
		2022~2024	제한경쟁	2022-06-29	65,454,545
27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021~2023	제한경쟁	2021-06-03	68,181,818
		2024~2026	제한경쟁	2024-06-21	79,090,909
2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2021	제한경쟁	2019-06-25	60,300,000
		2022~2024	제한경쟁	2022-06-30	59,400,000
29	국토안전관리원	2022~2024	제한경쟁	2022-05-17	100,909,091
30	한국소비자원	2019~2021	제한경쟁	2019-06-24	35,454,545
		2022~2024	제한경쟁	2022-06-24	54,545,455
31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2020~2022	지명경쟁	2020-08-05	62,550,000
		2023~2025	제한경쟁	2023-06-15	70,800,000
32	국립공원공단	2019~2021	제한경쟁	2019-07-05	100,818,181
		2022~2024	제한경쟁	2022-07-01	115,454,545
33	한국교통안전공단	2019~2021	제한경쟁	2019-06-26	105,000,000
		2022~2024	제한경쟁	2022-06-27	120,000,000
34	한국고용정보원	2021~2023	제한경쟁	2021-07-14	54,545,455
		2024~2026	제한경쟁	2024-08-09	68,181,818
35	(재)우체국금융개발원	2020~2022	제한경쟁	2020-06-19	66,000,000
		2023~2025	제한경쟁	2023-06-27	66,000,000
36	국립생태원	2020~2022	제한경쟁	2020-06-17	38,181,818
37	축산물품질평가원	2019~2021	일반경쟁	2019-06-28	30,000,000
		2022~2024	일반경쟁	2022-06-28	40,909,090
38	한국연구재단	2021~2023	제한경쟁	2021-07-21	122,727,272
		2024~2026	제한경쟁	2024-07-01	121,540,909
39	공무원연금공단	2020~2022	제한경쟁	2020-06-25	163,636,364
		2023~2025	제한경쟁	2023-06-28	163,636,364
40	기술보증기금	2020~2022	제한경쟁	2020-05-27	128,181,816
		2023~2025	제한경쟁	2023-05-30	216,946,364
41	신용보증기금	2020~2022	제한경쟁	2020-06-30	190,909,090

주: 낙찰자 선정방법은 모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임

자료: 공기업·준정부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5]

기관별 계약감사시간과 표준감사시간 비교(50개 기관)

(단위: 시간, %)

기관명	기관유형	계약 감사시간(A)	표준감사시간			비율 (A/B×100 )	
			표준감사시간(B)	업종	유형		그룹
평균		3,435	4,091			84.0	
한국전력공사	시장형 공기업 (11개)	31,957	55,849	기타	상장	1	57.2
한국수력원자력(주)		10,269	12,695	기타	상장	1	80.9
한국가스공사		20,273	14,320	기타	상장	1	141.6
한국중부발전(주)		6,541	7,369	기타	상장	1	88.8
한국남부발전(주)		6,100	7,632	기타	상장	1	79.9
한국남동발전(주)		6,212	6,909	기타	상장	1	89.9
한국석유공사		7,595	4,823	기타	상장	1	157.5
한국서부발전(주)		5,600	6,364	기타	상장	1	88.0
한국동서발전(주)		6,058	4,347	기타	상장	1	139.4
한국지역난방공사 (주)강원랜드		7,654 6,000	4,558 6,591	기타 서비스	상장 상장	1 2	167.9 91.0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3개)	6,022	4,326	서비스	사업보고서	7
한국철도공사	4,884		3,560	서비스	사업보고서	7	137.2
한국수자원공사	3,632		3,326	기타	사업보고서	7	109.2
한전KPS(주)	4,584		4,570	건설	상장	3	100.3
한국광해광업공단	4,500		2,820	서비스	사업보고서	7	159.4
주택도시보증공사	4,710		4,066	금융	사업보고서	7	115.8
한국마사회	1,216		2,039	서비스	사업보고서	7	59.6
주식회사 에스알	1,200		1,162	서비스	사업보고서	7	103.3
대한석탄공사	352		1,107	기타	사업보고서	7	31.8
한국전력기술(주)	4,579		2,296	서비스	상장	3	199.4
한전KDN(주)	2,200		1,522	서비스	사업보고서	7	144.5
그랜드코리아레저(주)	2,820		1,571	서비스	상장	3	179.5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824		1,263	서비스	사업보고서	7	65.2
예금보험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4개)	1,552	3,158	금융	사업보고서	7	49.1
한국자산관리공사		736	4,888	금융	사업보고서	7	15.1
국민체육진흥공단		1,000	2,158	서비스	사업보고서	7	46.3
국민연금공단		536	3,568	금융	사업보고서	7	15.0

기관명	기관유형	계약 감사시간(A)	표준감사시간			비율 (A/B×100 )	
			표준감사시간(B)	업종	유형		그룹
국가철도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2개)	1,584	2,331	서비스	사업보고서	7	68.0
한국장학재단		1,600	3,018	금융	사업보고서	7	63.0
한국산업단지공단		608	1,414	서비스	사업보고서	7	43.0
한국원자력환경공단		548	799	기타	사업보고서	7	68.6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480	1,793	서비스	사업보고서	7	26.8
한국국토정보공사		544	1,450	서비스	사업보고서	7	37.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20	1,191	서비스	사업보고서	7	26.9
한국관광공사		833	1,696	서비스	사업보고서	7	49.1
한국전기안전공사		560	918	서비스	사업보고서	7	61.0
한국전력거래소		608	1,189	서비스	사업보고서	7	5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15	1,320	서비스	사업보고서	7	46.6
한국가스안전공사		192	840	서비스	사업보고서	7	22.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76	850	서비스	사업보고서	7	79.5
한국국제협력단		600	1,133	서비스	사업보고서	7	53.0
(재)우체국물류지원단		288	915	서비스	사업보고서	7	31.5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92	719	서비스	사업보고서	7	26.7
한국석유관리원		441	544	서비스	사업보고서	7	81.1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50	640	서비스	사업보고서	7	39.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80	837	서비스	사업보고서	7	21.5
한국소비자원		256	597	서비스	사업보고서	7	42.9
한국교통안전공단		641	842	서비스	사업보고서	7	76.1
(재)우체국금융개발원		144	638	금융	사업보고서	7	22.6

자료: 공기업·준정부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6]

기관별 실제감사시간과 계약감사시간 비교(17개 기관)

(단위: 시간, %)

기관명	실제감사시간(A)	계약감사시간(B)	비율(A/B×100)
평균	5,990	5,995	99.9
한국토지주택공사	6,202	6,022	103.0
한국전력공사	32,746	31,957	102.5
한국가스공사	19,478	20,273	96.1
한전KPS(주)	4,402	4,584	96.0
한국중부발전(주)	6,540	6,541	100.0
한국서부발전(주)	5,617	5,600	100.3
한국자산관리공사	714	736	97.0
한국지역난방공사	7,759	7,654	101.4
(주)강원랜드	5,650	6,000	94.2
한국마사회	1,155	1,216	95.0
한국전력기술(주)	4,787	4,579	104.5
한전KDN(주)	2,196	2,200	99.8
그랜드코리아레저(주)	2,792	2,820	99.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32	615	102.8
한국가스안전공사	224	192	116.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76	676	100.0
한국소비자원	256	256	100.0

자료: 공기업·준정부기관 제출자료 재구성